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6. 9



2016.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6.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요 약

I.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요 쟁점, 해외사례, 타당성,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단일세율로 17%가 적용되며,
 - 비과세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고용주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이 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크게 다음의 5가지를 꼽을 수 있음
 -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현재와 같이 17% 단일세율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 인근 경쟁국과의 세율 격차를 고려하여 세율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는지
 - 업종 혹은 직종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 현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종사하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 적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지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5년 제한기간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이러한 5가지 쟁점들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국가들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분석한 뒤, 본 제도가 실질적인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인 효과를 지니는지를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음

II.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해외 사례는 크게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뒤 2) 우리나라와 인재유치 경쟁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리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는 국가들은 주로 소득세율 수준이 매우 높고 사회복지 혜택이 많은 고부담-고복지 국가들로, 단기 체류자의 경우 세금이 많이 부담하나 복지혜택은 많이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덴마크 최고세율 55.794%,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약 7천만원
 - 스웨덴 최고세율 56.99%,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약 6천만원
 - 네덜란드 최고세율 52%,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약 6,400만원
 - 아일랜드 최고세율 47%,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4,500만원

- 이들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보면, 덴마크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26%)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급여의 일정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함
 - 스웨덴은 총급여의 25%, 네덜란드는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함
 - 아일랜드는 총급여가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함

- 이들 국가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대체로 연소득 1억~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이며 국적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비거주자였던 자가 자국으로 들어와 근로를 시작함으로써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함
 -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 연구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자는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됨

- 대상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과세특례 제한기간 또한 3년에서 8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 외국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함
 -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일랜드와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의 기업이 고용주인 경우에 적용함
 -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은 아일랜드 3년, 덴마크와 스웨덴 5년, 네덜란드 8년임

- 우리나라와 외국인재 유치에서 주요 경쟁대상이 되는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세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조세 경쟁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각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17%, 20%, 25%로 세율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과세환경이 우수한 편임
 - 중국과 대만의 경우 홍콩 등에 비해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정 비용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음

- 다른 국가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아시아 주요국보다는 높은 편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감한 감면을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북유럽 국가들의 관련 제도와 매우 유사함
 -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고세율의 절반 이하로 완화하며, 적용기간에 제약(5년)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과세특례제도가 북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거주자-비거주자 조건 대신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판정함
 -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의 시한이 없어 장기 거주자도 혜택을 받음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고용주에 대한 규정이 없음

Ⅲ.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분석

- 제도 설계의 타당성은 크게 1) 정부 개입의 타당성 2) 지원 대상 설정의 타당성 3) 지원 규모와 방법의 적절성 4) 여타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정부 개입의 타당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근거들에 기반하여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근무할 경우 국내 거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이주비용, 주거비, 자녀교육비, 언어 교육비, 기타 현지 적응에 필요한 비용
 - 실제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신고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간 총급여가 4천만~1억원인 경우 실효세율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2.3~2.8%포인트 높음
 -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단기적으로 거주할 때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함
 -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전문가, 연구자, 경영자 등이 근무함에 따른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많으며, 그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에 장애가 된다면 조세지원을 통해 그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 지원 대상 설정의 경우 현재 1) 지원 대상자의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하며, 2)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데, 고용주에 대한 요건 규정이 없으며, 3) 근무하는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존재하는데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의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는 고급 인력의 국내 유입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내국인’ 구분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주에 관해서도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자의 업종이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함

- 지원 규모와 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를 통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17% 단일세제 지원방식은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세 최고세율 대비 특혜세율 수준과 유사하며,
 -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과세환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님
 - 다만, 연소득 3억원 이상인 고소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17%의 단일세율이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음
 - 5년 기간 제한의 경우에도 유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3~8년간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현재의 단일세제 지원방식은 제도의 단순성 측면에서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우월성이 존재하나,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따른 비용 보전 측면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덜 적합함
 - 두 방식 간의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의 방식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여타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본 제도와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은 찾을 수 없었으나, 조세지출사업 중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존재함
 - 두 제도(「조특법」 제18조, 「조특법」 제18조의2)는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규모 측면에서 「조특법」 제18조의 감면이 더 큰 반면, 지원기간 측면에서는 본 제도가 더 오래 지원하는 특징을 지님
 - 따라서, 두 제도 모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첫 2년간은 보다 혜택 규모가 큰 「조특법」 제18조를 적용한 뒤 이후 3년간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IV.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2008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 본 제도의 대상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지만, 해당 근로자들이 특정 기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로행위를 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자들의 소속 기업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 기록되고 있기에 이에 착안하여 기업별 패널자료를 구축함
- 본 제도의 취지가 소득세 감면을 통한 고급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성은 실제 기업별 외국인 인력의 증감과 외국인 노동자의 세 후 소득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여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만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본 세제혜택과 관련성이 높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후소득과 외국인 인력의 증감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임
- 국세청 미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세후소득과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 사이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업의 외국인 고용 규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총고용인원 또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기업별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 수는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후소득의 증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즉,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본 제도의 설계는 실질적으로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V. 정책제안

- 해외사례 분석과 제도의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일몰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 타당성 분석의 결과 정부 조세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효과성 분석의 결과는 본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고급 외국인 인력 유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 개편방안은 크게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지원규모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제도는 일부 소득구간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
 -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경제 여건이 변화하여 일부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우리의 주 경쟁대상국이라 인식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특정 국가와 유사한 과세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적절한 정책 목표가 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소득 3억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일 수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러한 일부 소득구간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17% 수준인 단일세율을 인상하거나 누진세율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단일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현재 1억~1억5천만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인상하는 결과가 나타남
 - 이 방안은 누진세율체제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제도가 단순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제도를 적용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17%의 기본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적용대상 최저소득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도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현재 제약이 없는 직종에 제한을 도입할 경우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직종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재원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대상 직종 선정에 있어 임의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국인을 역차별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중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을 받는 기업에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2014년 이전부터 근무한 외국인들에게는 기한 제한 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장기적으로는 5년으로 통일하는 것을 권고함
- 현재의 제도는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적이 없는 자’가 국내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는 것보다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국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목 차

I. 서 론	15
II.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특징과 쟁점	19
1.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1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특징	23
가. 제도 현황	23
나. 제도의 발전 과정	24
다. 제도의 특징	26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지원 현황	31
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자	31
나. 적용대상자의 소득수준별 분포	32
다. 적용대상자의 근무 기간별, 업종별 분포	34
라. 조세지원 규모	39
4. 주요 쟁점	42
III. 외국의 관련 제도	45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7
가. 덴마크	47
나. 스웨덴	48
다. 네덜란드	50
라. 아일랜드	51
2.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52
가. 홍콩	52
나. 싱가포르	53
다. 타이완	54

라. 말레이시아	55
마. 중국	56
3. 요약 및 시사점	57
I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61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63
2. 지원 대상 설정의 적절성	64
가. 적용대상 외국인의 정의	65
나. 고용주에 대한 요건	66
다. 소득 수준, 직종 등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67
3. 지원 규모와 방법의 적절성	70
가. 지원 규모의 적절성	70
나. 지원방법의 타당성	72
4. 재정지출 및 다른 조세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72
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75
1.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조세지원 현황	77
가. 주요 목표 그룹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황	77
나. 연도별 지원현황	79
다. 산업별 지원현황	81
라. 연도-산업별 지원현황	85
마. 지원 대상자의 특징	91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91
가. 선행 연구	92
나. 분석 자료	94
다.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95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가 재정세입에 미친 영향	101

VI. 제도 개선방안	103
1.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105
2. 지원 규모	107
3. 지원대상	110
참고문헌	115
<부 록>	117

표 목 차

<표 II-1>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22
<표 II-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변화 과정	25
<표 II-3> 외국인과 내국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비교(2014년)	29
<표 II-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근로자 수	33
<표 II-5> 외국인 근로자 중 과세특례 적용 근로자 비중(2014년)	34
<표 II-6>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자의 업종별 분포(2014년)	36
<표 II-7> 주요 업태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자수(2014년)	37
<표 II-8>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자의 업종별, 근무기간별 분포(2014년)	39
<표 II-9> 조세지출 규모	40
<표 II-10> 소득수준별 지원규모 추정(2014년)	41
<표 V-1>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등록자수	77
<표 V-2> 연도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80
<표 V-3> 2008~2014년도 총 산업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81
<표 V-4> 상위 10개 업종의 지원대상 인원수, 평균소득(2008~2014년)	85
<표 V-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업종별 적용대상 인원 및 평균소득	90
<표 V-6> 이민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92
<표 V-7> 국세청 요청자료 형태	94
<표 V-8> 분석 기간 중 제도 변화(2008~2014)	95
<표 V-9> 분석 결과(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 효과)	97
<표 V-10> 분석결과(당기순손익과 고급 외국인 인력규모의 관계)	100
<표 VI-1> 누진세율 적용시 세부담 수준의 변화 모의실험	110
<표 A-1> 2008-2014년도 산업별(중분류)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119
<표 A-2> 2008~2014년도 주요 산업별(대분류)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121
<표 A-3> 2008~2014년도 서비스 업태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122
<표 A-4> 2008~2014년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태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123

그 립 목 차

[그림 II-1] 외국인 등록자 수 변화(2014/2002)	28
[그림 II-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근로자 수	31
[그림 II-3] 소득수준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근로자 수	32
[그림 II-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자의 근무기간별 분포(2014년)	35
[그림 V-1] 급여수준별 연말정산자수 변화(2006년 대비 비율)	78
[그림 V-2] 연도별 이용자 수 현황	79
[그림 V-3] 연도별 평균소득 현황	80
[그림 V-4] 산업별(6개 분류별) 인원수	82
[그림 V-5] 산업별(기본분류 6개 부문) 평균소득	82
[그림 V-6] 산업별 인원수(통합대분류 30개 부문)	83
[그림 V-7] 산업별 평균소득(통합대분류 30개 부문)	84
[그림 V-8] 연도-산업별 인원수(6대 분류)	86
[그림 V-9] 연도-산업별 평균소득(6대 분류)	87
[그림 V-10] 연도-산업별 인원수(5대 통합대분류)	88
[그림 V-11] 연도-산업별 인원수(기본분류 6개 부문) 평균소득	88
[그림 V-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인원수	89
[그림 V-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평균소득	90

I. 서론



I. 서론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201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함
 - 2016년에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도 개편 사항을 검토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단일세율로 17%가 적용되며,
 - 비과세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고용주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경영인, 기술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을 모두 적용한 이후의 실효세율이 17% 이상인 경우에만 세부담이 절감 효과가 나타남
 -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연봉 1억 5천만원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세부담 절감 효과가 나타남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근로소득(과세소득+비과세소득)이 1억~2억원인 납세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14.9%이고, 2억~3억원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은 23.6%임(뒤의 <표 II-3> 참조)

-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제도가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유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였는지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함
 - 제II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소득에 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상의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의미와 기대효과, 과세특례 적용현황에 대해 살펴봄

- 그리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쟁점 사항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홍콩, 싱가포르 등 국외 인재유치에서 주요 경쟁 대상이 되는 인근 국가의 소득세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함
- 제Ⅳ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함
 -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특례 대상 설정의 적절성, 조세감면 방법의 타당성, 제도간 중복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함
- 제Ⅴ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재정 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용기업의 수익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함
- 제Ⅵ장에서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제Ⅶ장에서는 평가결과와 정책제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Ⅱ.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특징과 쟁점



II.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특징과 쟁점

1.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에 의해서 규정됨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제2조), 거주자는 다시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자와 5년을 초과하는 자로 구분됨(제3조)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제1조의2 제1항 1호)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제1조의2 제1항 2호)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가지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제3조, OECD 모델조약 제15조 제2항)
 - 고용주 요건: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 내국인이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이 상대방 체약국에 거주하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고용주 요건 충족
 - 국내 사업장 요건: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상대방 체약국에 거주하는 고용주의 국내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하는 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조약에 따른 고용주 요건과 국내 사업장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
- 예, 한미조세조약에는 소득금액이 3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원천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미조세조약 제19조 제3항)

〈표 II -1〉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거주자 여부	국내 체류 기간	기타 조건	납세의무	
			국내소득	국외소득
비거주자	183일 미만	조약상 비과세조건 충족 ¹⁾	×	×
		기타	○	×
거주자	5년 이하 ²⁾		○	△(국내송금분)
	5년 초과		○	○

주: 1) 고용주 요건, 국내 사업장 요건, 기타 조약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
 2)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과거 10년간 5년 이하 183일 이상
 출처: 「소득세법」 제1조의 2~제3조, OECD 모델조약 제15조 제2항

-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전체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소득세법」 제2조)
 - 단,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영주 거주자로 보아 국외 원천소득 중에서는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함(「소득세법」 제3조)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납세해야 함
 - 국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영주 거주자로 보아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183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주 요건 등 조세조약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 조약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특징

가. 제도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사용인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됨¹⁾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단, 특수관계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17%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제한됨
 - 5년의 제한 규정이 도입된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의 감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함

-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 17% 단일세율이 적용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이 특례제도는 201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됨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위 일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17%를 원천징수할 수 있음

나. 제도의 발전 과정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거주하기에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편인데도 세부담은 비교적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비, 주택 임차료 등으로 내국인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불에 대해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반면,
 -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체계가 복잡하여 다 적용하기 어렵고,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항목도 많아 내국인에 비해 세부담이 많은 편임²⁾
 - 외국인 근로자는 해외근무수당 등이 있어 본국 거주시에 비해 명목소득이 높는데 소득공제가 적고,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 적용 소득수준이 낮아서 본국에 거주할 때 비해 세부담이 많은 편임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음
- 2002년에 과세특례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해외근무수당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제공하였음

2) 뒤의 <표 II-3> 참조

- 해외근무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총액에서 자녀 교육비, 주택 임차료를 차감한 금액의 40%를 한도로 자녀 교육비와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음
- 2003년에 제도를 개편하여 ①국내 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을 소득공제하는 방법과, ②국내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17%는 인근의 경쟁국 세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근 국가 중 홍콩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17%였음

<표 II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변화 과정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2.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해외근무수당의 40%를 소득공제 ○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국내 거주를 위한 임차료 소득공제 - 이 경우, 일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및 주택임차료를 차감한 금액의 40%를 한도로 함
200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2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소득세를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을 소득공제 - 17% 단일세율 적용 및 분리과세
2006.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일몰기한 도입(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8.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
2010.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국내 근로소득의 30%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2년 말까지 연장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15%에서 17%로 인상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 ○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
2014.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상시적용 실시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도 의무심층평가 대상 후보군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2015. 12, p. 3

- 2006년에는 일몰기한을 도입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과세특례의 기한을 정하였음
 - 일몰기한은 이후 세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16년 12월 31일이 기한임

- 2008년에는 단일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하였음
 - 홍콩에서 2008년에 종합과세 대신, 기부금을 공제하고 인적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 이는 2008년 이후 홍콩의 소득세 평균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됨을 의미함

- 2010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특례세율을 15%에서 17%로 인상함
 - 2014년 1월에는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함
 - 2014년 12월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몰기한 없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함

다. 제도의 특징

1) 인근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조세환경 조성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제도의 운영방향이 약간씩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처음(2002년)에는 외국인의 세부담이 과다하여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곧(2003년) 홍콩을 겨냥하여, 외국인에게 홍콩과 유사하거나 더 유리한 과세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였음
 - 2008년에는 홍콩이 15% 단일세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도 특례세율을 15%로 낮췄음

- 최근(2013년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과세특례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됨
 - 적용세율이 17%로 인상되었고, 적용기한이 5년으로 제한됨

-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본국에 거주할 때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 자녀의 외국인학교 교육비, 주택 임차료 등과 같이 외국인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큰데, 이에 대해 적절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해외근무수당 등으로 인하여 명목소득이 높는데, 과세구간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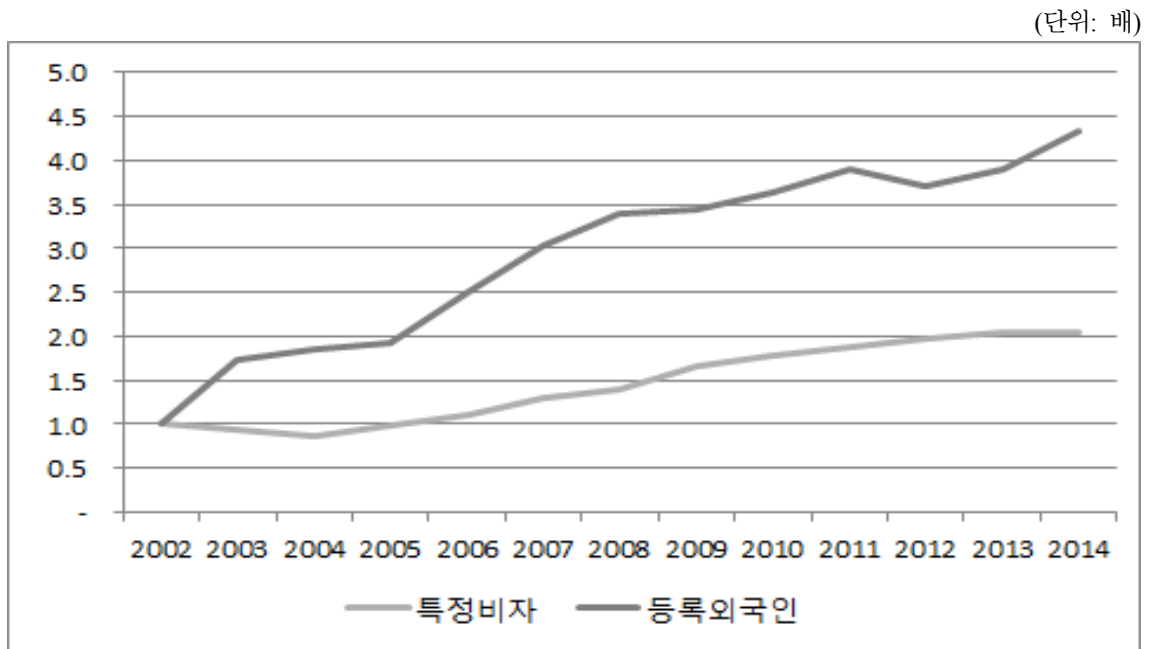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홍콩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있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인근 국가 중 홍콩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세제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측면에서라도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가 홍콩과 한국 중 어느 쪽에 납세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국내 세율을 낮춰서라도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함
 - 예를 들어, 외국인 A가 한국과 홍콩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한국 근무일이 183일 미만이고, 앞에서 언급한 조약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없음
 - 이 경우에 한국에서의 세부담이 홍콩에서의 세부담보다 크다면, 이 납세자는 한국과 홍콩에서의 근무일을 조정하여 홍콩에서 납세하려는 유인을 가짐

-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생활환경이 개선되

어 과세특례를 축소하여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됨

- 2002년 당시 25만명 수준이었던 등록 외국인 수가 2014년에 4.3배인 109만명이 되었음³⁾
 - 한편 과세특례제도의 주요 타깃이 되는 특정 비자를 받은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2년 31,315명에서 2014년 63,872명으로 2배 증가하는 데 그침⁴⁾
- [그림 II-1]에 따르면,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2004년까지 특정 비자를 받은 외국인 등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과세특례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뒤의 제V장에서 자세하게 검토함

[그림 II -1] 외국인 등록자 수 변화(2014/2002)^{1), 2)}



주: 1) 2014년의 외국인 등록자 수를 2002년의 외국인 등록자 수로 나눈 배수

2) 특정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가 주요 타깃으로 하는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등록자를 의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3)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4

4) 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직업(E-7)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의견」, 성과지표 참조, 2014

2) 고소득 전문가에 대한 지원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임
- <표 II-3>에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와 국내 근로자 전체의 연말정산 자료를 사용하여 실효세율을 비교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므로 근로자 전체의 자료가 내국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대변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임
 - 2014년에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51만명, 전체 근로자가 약 1,669만명으로 외국인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 정도임

<표 II -3> 외국인과 내국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비교(2014년)

(단위: 명, 백만원, %, %p)

과세표준 규모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전체			A-B
	근로자수	1인당 총급여	실효세율 (A)	근로자수	1인당 총급여	실효세율 (B)	
평균	507,567	23	5.7	16,687,079	32	4.8	0.9
과세미달	88,705	3	-	8,023,836	14	-	-
4천만 이하	395,814	19	1.2	5,770,531	30	1.7	-0.5
6천만 이하	6,599	61	6.7	1,575,678	62	4.4	2.3
8천만 이하	3,741	83	10.0	684,069	83	7.2	2.8
1억 이하	2,509	103	12.2	320,312	104	9.9	2.3
2억 이하	5,272	152	16.2	265,952	141	14.9	1.4
3억 이하	2,486	244	17.4	26,875	257	23.6	-6.2
5억 이하	1,741	381	17.7	12,948	393	26.9	-9.2
10억 이하	566	657	18.3	5,124	692	30.2	-11.8
10억 초과	134	1,883	22.7	1,754	1,913	33.8	-11.0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외국인 근로자 평균소득이 2,300만원이고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이 3,200만원으로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는데, 실효세율은 5.7%로 전체 평균 4.8%보다 0.9%p 높음

- 소득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보다 낮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4천만원 이하인 구간의 외국인 평균소득은 1,900만원인데, 전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임
 -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여 총급여가 4천만원 이하인 구간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484,519명으로 총 외국인근로자 507,567명의 95%를 차지함

- 4천만~6천만원 구간과, 6천만~8천만원, 8천만~1억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평균소득과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이 유사한 수준인데,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누어 산출한 실효세율은 외국인 근로자가 2.3~2.8%포인트 높음

-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과세특례세율인 17%보다 상당히 낮아 과세특례제도가 세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 1억~2억원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가 1.4%포인트로 축소되며, 소득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전체 근로자보다 낮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7%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 비해,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은 17%를 넘어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상승함

-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와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1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며, 3억~5억원 구간에서는 9.2%, 2억~3억원 구간에서는 6.2%포인트의 세율 격차가 발생함

- 한편 2010년에 폐지한 근로소득 30%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였음
 - 근로소득 30% 공제제도가 폐지된 2010년에 15%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수가 5,044명으로 전년의 1,511명에 비해 3,533명 증가하였음⁵⁾
 - 그 중 거의 대부분(3,333명)이 소득 수준 3억원 이하인데, 이들은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30% 소득공제에서 15% 단일세율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됨

5) 뒤의 <표 I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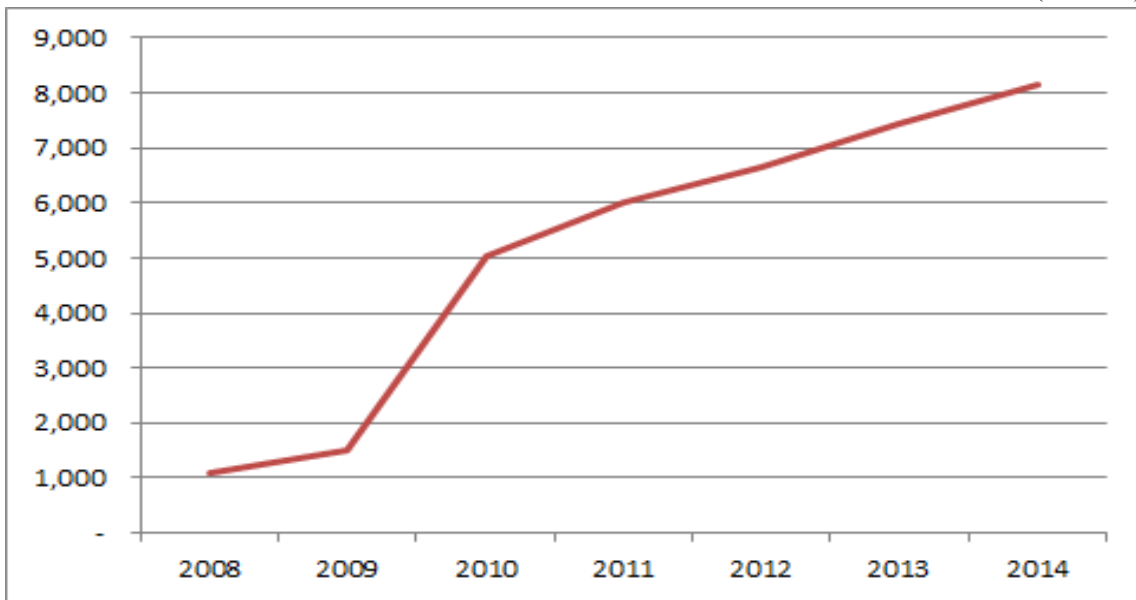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지원 현황

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자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숫자를 보면, 2008년에 1,079명, 2009년에 1,511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5,044명으로 갑작스럽게 3,533명이 증가함
 - 이는 2010년에 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제도로 이전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⁶⁾
 - 특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집단에서 1,857명 증가하고,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집단에서 1,221명 증가함
 - 이 두 집단의 증가분이 3,078명으로 2009년 수혜자 전체의 두 배를 넘음
 - 그 이후에는 매년 650~950명 정도씩 증가하였음

[그림 II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근로자 수

(단위: 명)



출처: 국세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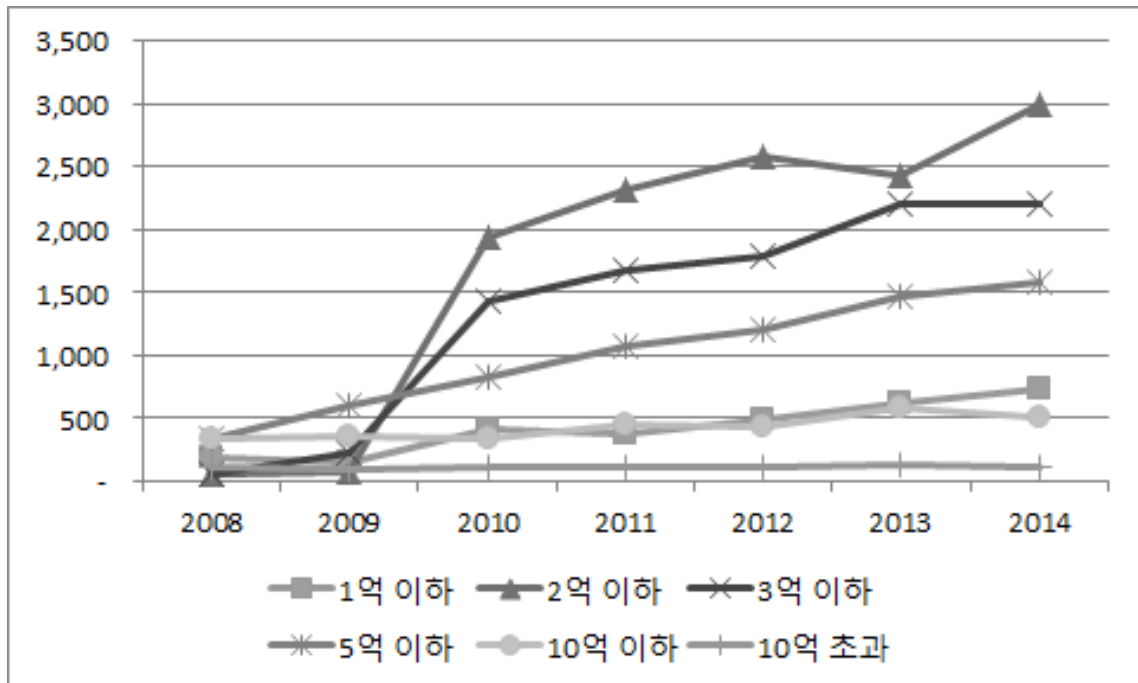
6) 소득공제의 폐지는 2011년 소득부터 적용되었으나, 201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고 이전인 2010년 10월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2010년 소득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나. 적용대상자의 소득수준별 분포

- 소득수준별로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0년에 1억~2억원, 2억~3억원 구간의 특례 적용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구간에서는 1억~2억원, 2억~3억원, 3억~5억원 구간이 대체로 비슷한 증가세를 보임
 - 2013년에 1억~2억원 구간의 특례 적용대상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례세율이 15%에서 17%로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표 II-3>에 따르면 이 구간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실효세율이 16.2%로 15%를 상회함
 -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수는 100~110명 수준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5억~10억원 구간의 근로자 수는 다른 구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임

[그림 II -3] 소득수준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근로자 수

(단위: 명)



출처: 국세청 제공

<표 II -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근로자 수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성비 (2014)
1억 이하	185	154	409	372	490	618	735	9.0
2억 이하	50	76	1,933	2,316	2,589	2,433	3,004	36.9
3억 이하	63	215	1,436	1,673	1,795	2,208	2,207	27.1
5억 이하	337	603	821	1,074	1,212	1,474	1,590	19.5
10억 이하	338	363	333	446	440	577	505	6.2
10억 초과	106	100	112	111	116	121	106	1.3
전체	1,079	1,511	5,044	5,992	6,642	7,431	8,147	100.0

출처: 국세청 제공

- 2014년의 소득수준별 과세특례 적용대상 근로자 수 구성비를 보면, 1억~2억원 구간이 36.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2억~3억원 구간 27.1%, 3억~5억원 구간이 19.5%의 순임
 - 이 세 개 구간(1억~5억원 구간)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3.5%임
 - 1억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이고, 5억~10억원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1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임

- 앞의 <표 II-3>에서 살펴본 실효세율 표에 따르면, 1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도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가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함
 - [그림 II-3]과 <표 II-4>에 따르면 1억원 이하 구간의 특례 적용대상자 수가 2010년 409명에서 2014년 73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소득이 1억원 이하인데도 과세특례를 신청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음
 - 세제의 단순성 때문에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함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상당히 많아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실효세율이 17%를 넘게 되는 경우에 근로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17% 단일세율이 강제 규정인 것으로 오해하여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자의 비중은 1.6%로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아 과세특례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2014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95%가 소득수준이 4천만원 이하임⁷⁾

□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과세특례 혜택을 받음

○ 특히 2억~10억원 구간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90% 내외가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80%가, 1억~2억원 구간에서는 57%가 혜택을 받음

<표 II -5> 외국인 근로자 중 과세특례 적용 근로자 비중(2014년)

(단위: 명, 백만원,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자 비중
	근로자수	1인당 평균급여	근로자수	1인당 평균급여	
1억 이하 ¹⁾	19,822	65	735	54	3.7
2억 이하	5,272	152	3,004	159	57.0
3억 이하	2,486	244	2,207	243	88.8
5억 이하	1,741	381	1,590	379	91.3
10억 이하	566	657	505	649	89.2
10억초과	134	1,883	106	1,648	79.1
전체	507,567	23	8,147	265	1.6

주: 1)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이 3천만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만 포함시켰으며, 과세특례자는 1억원 이하를 모두 포함시킴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다. 적용대상자의 근무 기간별, 업종별 분포

□ [그림 II -4]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의 국내 근무기간별 분포를 정리하였음

○ 2014년부터 국내에 근무한 지 5년 동안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나, 이 기간 제한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외국인에게만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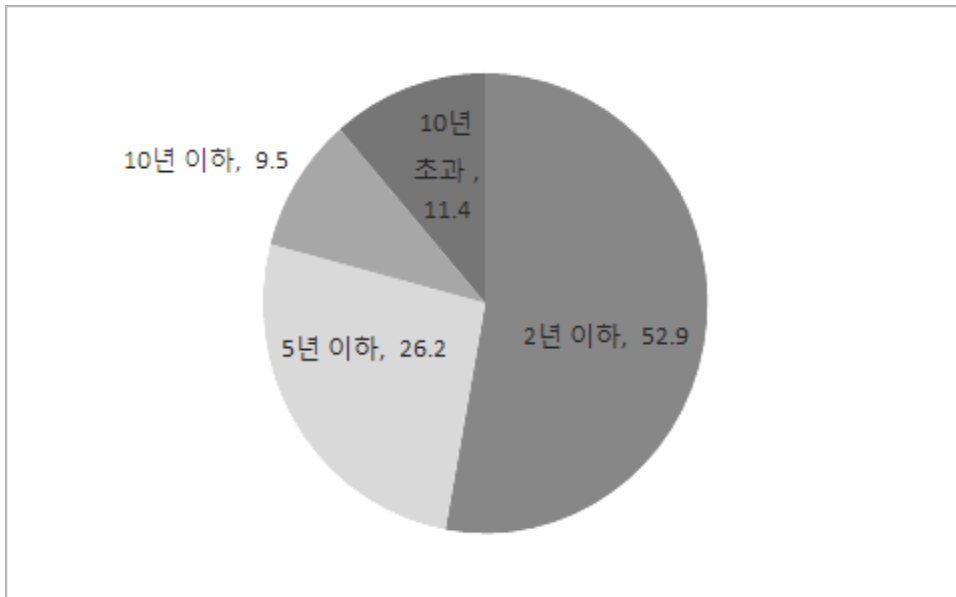
7) 앞의 <표 II-3> 참조

- 그러므로 기간 제한의 실질적인 효과는 2014년 이후 5년이 지난 2019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된 8,147명 중 2년 이하 근무자가 4,308명으로 52.9%를 차지하며, 2~5년 근무자가 26.2%, 5~10년 근무자가 9.5%,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가 11.4%임
-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는 1,701명으로 전체 과세특례 대상 중 20.9%를 차지함

[그림 II -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자의 근무기간별 분포(2014년)

(단위: %)



출처: 국세청 제공

- <표 II-6>에서는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수를 비교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과세특례 대상자 8,147명의 32.9%인 2,682명이 이 업종에 속함
 - 그다음은 제조업(20%, 1,631명), 도소매업(12.7%, 1,032명), 금융 및 보험업(7.5%, 612명)의 순임
- 과세특례 대상자의 업종별 급여 수준을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 보험업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급여가 많은 편임

-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36.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제조업 18.5%, 도소매업 11.7%, 금융 및 보험업 10.6%의 순임
-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 순위 차이는 없으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낮아짐

<표 II -6>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자의 업종별 분포(2014년)

(단위: 명, %, 백만원, 배)

업종	근로자수		1인당급여		총급여의 업종별 비중
	근로자수	비중	급여액	전체평균 대비 비율	
전체	8,147	100.0	265	1.0	100.0
제조업	1,631	20.0	245	0.9	18.5
건설업	92	1.1	230	0.9	1.0
도소매업	1,032	12.7	245	0.9	11.7
음식숙박업	55	0.7	219	0.8	0.6
운수창고통신업	239	2.9	253	1.0	2.8
금융 및 보험업	612	7.5	375	1.4	10.6
부동산업	82	1.0	255	1.0	1.0
임대·사업서비스업	2,682	32.9	296	1.1	36.8
교육서비스업	43	0.5	182	0.7	0.4
보건(의료업)	45	0.6	212	0.8	0.4
기타 ¹⁾	1,634	20.1	214	0.8	16.2

주: 1) 기타는 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업종과 분류미상의 합계
출처: 국세청 제공

- <표 II-7>에서는 과세특례 대상자가 많은 업종의 업태별 과세특례 대상자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1,042명으로 가장 많음
- ‘전문서비스업’은 658명인데, 주로 변호사, 경영컨설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구성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80명임

<표 II -7> 주요 업태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자수(2014년)

(단위: 명, %)

업종코드 및 업태명	근로자수	5년 초과 근무자 비중
제조업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74	14.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3	20.3
30~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43	26.8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0	14.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4	18.6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	35.0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78	16.7
도소매업		
519*** 상품종합도매업	518	15.3
음식숙박업		
551001 호텔업	40	25.0
운수창고통신업		
621000 항공운송업	105	51.4
금융보험업		
659*** 금융업	300	33.7
66*** 보험업	111	31.5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01	74.6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80	36.1
741*** 전문서비스업(변호사, 경영컨설팅 등)	658	38.3
74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42	11.2
749*** 사업지원 서비스업	727	9.6
소계	5,394	23.5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자 전체	8,147	20.9

출처: 국세청 제공

-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74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74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4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3명의 순임
- 도소매업은 ‘상품종합도매업’이 51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금융보험업의 경우 ‘금융업’ 300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201명, ‘보험업’이 111명임
- 그 외 ‘항공운송업’(105명), ‘종합건설업’(78명), ‘호텔업’(40명) 등도 비교적 과세특례 대상이 많은 분야임

- <표 II-7>에 나타난 주요 업태의 과세특례 대상자가 과세특례 대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2%임
 - 과세특례 대상자 전체에서 국내에서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인 데 비해, 표에 나타난 주요 업태의 경우에는 23.5%로 5년 초과 근무자 비중이 높은 편임

- <표 II-8>에서는 업종별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의 국내 근무기간별 구성을 살펴보았음
 - 전체적으로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의 비중이 20.9%인데, 일부 업종에서는 5년 초과 근무자의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음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5년 초과 근무자의 비중이 46.7%이고, 보건(의료업)은 44.4%, 운수창고통신업은 38.5%, 부동산업은 36.6%임
 - 음식숙박업과 제조업의 5년 초과 근무자 비중도 각각 27.3%와 23.2%로 전체 평균보다는 5년 초과 근무자 비중이 높은 편임
 - 한편, 건설업, 도소매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년 초과 근무자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음

- <표 II-7>에 나타난 주요 업태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년 초과 근무자가 과세특례자의 74.6%를 차지하며, ‘항공운송업’의 경우에도 51.4%를 차지함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금융업’(33.7%), ‘보험업’(31.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36.1%), ‘전문서비스업(변호사, 경영컨설팅 등)’(38.3%)에서 5년 초과 근무자 비중이 높은 편임
 - 한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합건설업’, ‘상품종합도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5년 초과 근무자의 비중이 20% 미만임

<표 II -8>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자의 업종별, 근무기간별 분포(2014년)

(단위: 명, %)

업종	근로자수		근무기간별 구성			
	근로자수	비중	계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전체	8,147	100.0	100.0	52.9	26.2	20.9
제조업	1,631	20.0	100.0	48.6	28.2	23.2
건설업	92	1.1	100.0	48.9	33.7	17.4
도소매업	1,032	12.7	100.0	47.0	34.5	18.5
음식숙박업	55	0.7	100.0	49.1	23.6	27.3
운수창고통신업	239	2.9	100.0	31.0	30.5	38.5
금융 및 보험업	612	7.5	100.0	28.4	24.8	46.7
부동산업	82	1.0	100.0	43.9	19.5	36.6
임대·사업서비스업	2,682	32.9	100.0	57.0	23.4	19.6
교육서비스업	43	0.5	100.0	48.8	37.2	14.0
보건(의료업)	45	0.6	100.0	40.0	15.6	44.4
기타 ¹⁾	1,634	20.1	100.0	67.6	23.7	8.7

주: 1) 기타는 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업종과 분류미상의 합계
출처: 국세청 제공

라. 조세지원 규모

- <표 II-9>에서는 조세지출 규모가 최초로 발표된 2005년 이후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난 조세지출 규모와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조세지원 규모를 정리 하였음
- 국세청에서는 매년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와 소득세 기본세율체계를 과세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총액에 적용하여 특례 적용 전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함
- 조세지출규모는 2005년 65억원에서 2014년 1,628억원으로 9년 사이에 25배 증가 하였음
- 특히 2008~2011년에는 3년 사이에 271억원에서 1,997억원으로 6배로 증가하였으며, 증가 규모는 1,726억원으로 증가분이 2014년 조세지출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임

- 이 기간의 조세지출 규모 증가는 2008년에 근로소득 30%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어 그 혜택을 받던 자들이 대거 단일세율제도로 이동한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지원대상 인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 기간 중에 특례세율이 15%에서 17%로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II -9>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 명, 백만원)

	조세지출		적용대상 인원	1인당 평균지원액
	금액	증가율		
2005	65	-	-	-
2008	271	316.9	1,079	25
2011	1,997	636.9	5,992	33
2014	1,628	-18.5	8,147	20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 연도

- 1인당 평균 조세지원액 규모는 2008년 2,500만원에서 2011년 3,3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 2천만원으로 축소됨
 - 특례세율이 15%에서 17%로 인상됨에 따라 1인당 지원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와 납세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면, 1인당 평균 조세지원 혜택이 거의 근로자 평균소득에 맞먹는 규모의 조세지원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지 또는 납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세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조세지원이 오히려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표 II-10>에서는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해 소득 수준별 조세지원 혜택의 규모를 추정하였음
 - 조세특례가 없는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 비해 실효세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에 2.3%포인트를 더하여 외국인 근로자 실효세율을 추정함

- 총급여 8천만~1억원 구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2.3%포인트임(<표 II-3> 참조)

<표 II -10> 소득수준별 지원규모 추정(2014년)

(단위: %, 백만원)

총급여	근로자 전체 실효세율	외국인 근로자 실효세율 추정치 ¹⁾	특례대상자 1인당 급여총액	1인당 평균지원액 ²⁾
1억~2억	14.9	17.2	159	0.2
3억 이하	23.6	25.9	243	21.5
5억 이하	26.9	29.2	379	46.2
10억 이하	30.2	32.5	649	100.3
10억 초과	33.8	36.1	1,648	314.0

주: 1) 과세특례가 없는 경우의 외국인 근로자 실효세율 추정치, 근로자 전체 실효세율에 2.3%p를 더하여 추정, 2.3%p는 총급여 8천만~1억 구간에서의 근로자 전체 실효세율과 외국인 근로자 전체 실효세율의 격차(<표 II-3> 참조)

2) 외국인 근로자 실효세율 추정치와 과세특례 실효세율(17%)의 격차를 과세특례자 1인당 급여에 곱하여 산출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 연도

□ 1인당 조세지원 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총급여 1억~2억원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지원 혜택이 20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1억~3억원 구간에서는 2,200만원, 3억~5억원 구간에서는 4,600만원으로 증가함
-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지원액이 1억원으로 평균 급여의 15%,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인당 평균 지원액이 3억 1,400만원으로 평균 급여의 19%에 달함

□ <표 II-10>의 소득규모별 지원규모 추정 결과를 근거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면 2,054억원으로 <표 II-9>에 나타난 조세지출 규모 1,628억원보다 큼

- 이 차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전 실효세율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표 II-9>에서 나타난 추정치는 국세청에서 추정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부담이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부담과 일치한다고 가정함
- <표 II-10>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2.3%포인트 높다고 가정함

4. 주요 쟁점

□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쟁점 중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임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①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세부담이 내국인 근로자나,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에서 근무할 때에 비해 높으며, ② 이와 같이 높은 세부담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치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앞서 <표 II-3>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과세특례제도가 없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부담이 소득수준이 유사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임
- 높은 세부담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의 제V장에서 검토함

□ 두 번째 쟁점은, 17% 단일세율제도로 되어 있는 지원방식이 적절한가 하는 점임

- 17% 단일세율제도는, 발전 과정을 볼 때, 인근의 경쟁대상국 중 과세환경이 가장 우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과세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에는 홍콩이 최고 평균세율을 15%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례대상 세율을 15%에서 17%로 인상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음
-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인근 경쟁국과의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재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격차를 축소하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

- 세 번째 쟁점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의 문제임
 - 외국인 관련 과세규정에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비영주 거주자의 경우 10년의 기간 중 5년 이내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또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로 제한됨
 - 5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 조금 더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쟁점은, 별다른 조건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특정 업종이나 직종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임
 - 우리나라의 다른 조세지원은 대부분 특정 업종 또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과 같이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이러한 제한 없이 17% 단일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연간 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가 주로 혜택을 받고,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짐

- 한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지원대상을 특정 직종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이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⁸⁾
 - 2014년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109만명인데, 이 중 과세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직종의 비자를 받은 자는 63,872명으로 외국인 등록자의 5.9%에 불과함⁹⁾

- 업종별로 보아도 특정 업종에 특례대상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32.9%, 제조업이 20%, 도소매업이 12.7%, 금융 및 보험업이 7.5%를 차지함

8)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의견」, 2014.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5.

- 좀 더 세분해서 보면, 2014년의 적용대상자가 8,147명인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1,042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743명, ‘전문서비스업(변호사, 경영컨설팅 등)’이 658명, ‘상품 종합도매업’이 518명을 차지함

- 다섯 번째 쟁점은,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자는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임
 - 기간 제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도입 이전부터 혜택을 받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혜택이 계속되도록 하는 조부규정(grandfathering clause)이 적용되고 있음
 - 2014년 특례 적용대상자 중 47.1%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5년의 기간 제약을 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조세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러한 제약이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으로의 이주 또는 신규 근로자 유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Ⅲ. 외국의 관련 제도



Ⅲ. 외국의 관련 제도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를 조사·정리하는데, 제1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는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고,
 -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재유치 경쟁 대상이 되는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리함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다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는 많지 않는데, 다음에서는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들의 조세지원 내용을 정리함

가. 덴마크

-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 덴마크는 2015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55.794%,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이 405,785.75 DKK임¹⁰⁾
 - 덴마크 근로자 평균임금의 1.2배가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소득이 7천만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됨
- 한편, 외국인 연구자와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없이 5년간 2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¹¹⁾

10) OECD Tax Database, 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2016. 4. 21 접속

11) SKAT, "Tax scheme for foreign researchers and highly-paid employees", <http://www.skat.dk/SKAT.aspx?oId=97319>, 2016. 4. 21 접속
이하 덴마크의 특례제도에 대한 설명은 이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이 제도는 덴마크인이나 외국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채용된 후 덴마크로 이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연구자는 대학이나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최소한 박사학위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함
 - 고소득 근로자란 월급여가 62,300DKK(2015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천만원 수준임
 - 이 소득기준은 노동시장기여금(labor market contribution)과 세금 공제 전, 노동시장 보완적 연금 기여금(labo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 fund (ATP) contribution) 공제 후 소득임
 - 노동시장 기여금을 합할 경우 근로자의 총부담은 31.92%임
- 고용주에 대해서는 덴마크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함
- 완전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상속재단
 - 덴마크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 또는 그 사업에의 참여로 인해서 제한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상속재단
 - 완전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
 - 덴마크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 또는 그 사업에의 참여로 인해서 제한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기업
 -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 재단, 조합 등
- 요약하면, 덴마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세율의 절반 정도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며, 적용기간은 5년,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기관에 고용된 연구자와 연급여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임

나. 스웨덴

- 우리나라와 덴마크가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달리 스웨덴과 아래 소개하는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함

- 스웨덴은 2015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56.99%,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이 421,364.93 SEK임¹²⁾
 - 스웨덴 근로자 평균임금의 1.5배가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소득이 6천만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됨

- 외국인 전문가, 연구자, 그 외 핵심요원(key personnel)은 3년간 소득의 25% 비과세 혜택을 받음¹³⁾
 - 2012년 이전에는 전문가, 연구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급여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적용됨
 - 월소득이 기초가액(base amount)의 두 배 이상이면 혜택을 받는데, 기초가액은 44,500SEK임
 - 한화로 환산하면 대체로 월급여가 1,25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부분 즉, 소득의 25%는 사회보장기여금 산출할 때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급여에는 주택보조금 등 급여 성격의 지원액을 모두 포함함

- 기술자, 전문가, 과학자, 연구자, 경영진 등 핵심요원의 경우에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25%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핵심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가이드라인만 제시되어 있음
 - The Taxation of Reseach Workers Board에서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

-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란 비거주자를 의미하며, 과거 5년간 스웨덴에서 과세 목적상 거주자였던 적이 없어야 함
 -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 내의 고정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스웨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스웨덴에 파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약하면, 스웨덴은 과거 5년간 스웨덴의 거주자였던 적이 없는 비거주자가 스웨덴의 기업이나 스웨덴 내의 고정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비과세함

12) OECD Tax Database, 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2016. 4. 21 접속

13) 이하 스웨덴의 외국인 핵심요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katterattsnamnden.se/forskarskattenamnden/summaryinenglish/taxreliefforforeignkeypersonnel.4.383cc9f31134f01c98a800018147.html> 2016. 4. 21 접속

- 연구자 등 전문가와 일정소득(대략 연급여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3년임

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2015년 최고세율이 52%이고, 평균임금의 1.2배, 49,235.38유로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적용됨¹⁴⁾
 -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6,4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됨
- 네덜란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30% 규정(the 30% ruling)이 있음¹⁵⁾
 -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①총소득의 30%와 ②자녀의 초·중등학교 납입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시에도 총소득의 30%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됨
 - 30% 규정은 네덜란드에서 부족한 특정 전문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2012년에 제도를 개편하여 최소소득 조건을 충족시키면 업종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음
 - 2016년의 최소소득 기준은 총소득 52,699유로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6,700만원 수준임
 - 최소소득 수준은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함
 - 30% 규정이 적용되는 기한은 최대 8년이며,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던 자는 10년임
 - 과거 25년간의 혜택을 합산하여 적용기한을 산정함
- 30%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은 외국인 고용주가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한 자 또는 외국에서 채용된 자를 말함
 - 과거 2년의 기간 중 2/3 이상을 네덜란드의 직장으로부터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국적이 네덜란드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14) OECD Tax Database, 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2016. 4. 21 접속

15) 이하 네덜란드의 외국인 핵심요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expatica.com/nl/finance/Tax-exemption-Dutch-30-percent-ruling-explained_101641.html, 2016. 4. 21 접속

- 과거 25년간의 혜택을 합산하여 적용기한을 산정함
- 요약하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로부터 일정 거리(1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던 전문가가 외국에서 고용되어 네덜란드에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총 급여의 30%와 자녀 학교 교육비를 비과세함
- 과거에는 네덜란드에서 최소한 전문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었으나 2012년 이후 제도가 변경되어 일정한 소득(약 6,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라.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2015년 최고세율이 47%이고, 평균임금의 0.97배, 34,847.219유로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적용됨¹⁶⁾
-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4,5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됨
- 아일랜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SARP(Special Assignee Relief Program)이 있음¹⁷⁾
- 이 제도는 기본급여가 75,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총급여에서 75,000유로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함¹⁸⁾
 - 총급여에는 상여금, 현물급여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받은 지급액이 모두 포함되며,
 - 기본급여에는 상여금, 수수료, 기타 유사한 지급액이나 혜택이 포함되지 않음
 - 75,000유로는 한화로 9,700만원 수준임
- SARP로 인해 소득공제되는 부분은 사회보장기여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됨
- SARP 적용기간은 최대 5년임
- SARP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고용주와 근로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6) OECD Tax Database, 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2016. 4. 21 접속

17) 이하 아일랜드의 외국인 핵심요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www.revenue.ie/en/tax/it/reliefs/sarp.html>, 2016. 4. 21 접속

18) 2014년까지 SARP 적용 소득 상한이 50만 유로로 제한되었으나 2015년부터 상한이 폐지됨

- 고용주는 아일랜드와 이중과세방지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기업이어야 함
 - 근로자는 외국의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서 또는 아일랜드의 계열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아일랜드에 파견한 근로자로서, 아일랜드에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아일랜드로 파견되기 이전에 자신을 파견한 고용주에게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했어야 함
 - 2014년 이전에 파견된 경우에는 최소 12개월 이상 해당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했어야 함
 - 국적이 아일랜드인지 여부는 혜택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
- 요약하면,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 아일랜드로 파견하는 직원의 급여에 중 75,0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12개월 이상 아일랜드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최대 5년임

2.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 다음에서는 외국인 투자,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주로 경쟁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리함

가. 홍콩

-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기업들이 지역본부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곳은 홍콩과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걸맞게 많은 ‘출국 근로자’들이 근거를 두고 있음
- 홍콩의 소득세 중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근로소득세(salaries tax)’로 불리는 세금임¹⁹⁾

19) 서울 등 홍콩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제의 자세한 내용은 홍콩 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taxrates/salariesrates.htm>, 2016. 4. 21 접속

- 이 세금은 ‘속지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과됨
-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진세율체제와 단일세율체제 중에서 적용받을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세율은 2~17%의 누진세율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17%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순소득 기준으로 12만홍콩달러(한화 약 1,800만원) 이상임
 - 단일세율로는 15%가 사용됨
- 이러한 세율 체계는 언뜻 보아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와 비슷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공히 적용되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인데, 1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체제의 적용을 받게 됨²⁰⁾
 - 이와 같이 183일 이상 계속하여 머무르는 기간이 2개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이 사람은 그 2년 내내 거주자인 것으로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누진세율체제의 적용을 받음
 - 이때에는 각종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2016년 기준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2~20%의 초과누진세율임
- 반대로 1년에 183일 미만을 머무르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어 특별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머무르는 기간이 61일에서 182일까지 사이인 경우, 15%의 단일세율과 일반적 누진세율체제에 따라 산정(각종 공제 포함)된 세액 중 큰 쪽의 부담을 짐

<http://www.gov.hk/en/nonresidents/workinghk/taxinhk/taxobligations.htm>, 2016. 4. 21 접속

20) 세율 등 싱가포르의 소득세 과세체제의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title3>, 2016. 4. 21 접속

- 60일 이하를 머무르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과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싱가포르의 15% 단일세율 역시 언뜻 보아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일반적 누진세율체계와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특히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 역시 홍콩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소득세제 관련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조세특례로서 NOR 규정(Non Ordinarily Resident Scheme)과 ARS(Area Representative Scheme)이 있음²¹⁾
- NOR 규정은 과거 3년간 비거주자였던 자가 거주자가 된 이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ARS는 비거주자에게 고용되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상 외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는 비거주자인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됨
 - 이 경우에는 총소득을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기간과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의 비례로 배분하여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함(Time Apportionment of Income)

다. 타이완

- 타이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역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취급을 달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²²⁾
- 90일 이내의 기간만을 타이완 내에 머무르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타이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91일에서 182일까지 머무르는 경우에는 18%의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만이 생김

21) 싱가포르의 외국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Foreigners/Learning-the-basics/Basic-Guide-for-New-Individual-Taxayers--Foreigners-/>, 2016. 4. 21 검색

22) 타이완의 소득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이완 재무부에서 발간한 다음 책자 참조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15, 2015.

- 183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취급하고 이때에는 각종 공제의 적용을 받은 후 5~45%의 누진세율체계에 따라 과세함(2015년)
 - 단일세율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하고 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인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함
- 국내 기업의 외국인 전문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학교, 또는 기업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면서 고용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경비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²³⁾
- 외국인 전문가 자신과 가족의 모국 방문 경비,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국외 휴가 경비, 이주비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주택 임차료, 주택수리비, 자녀 교육비 지원

라.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차별을 두고 거주자는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입장이지만, 세율 체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²⁴⁾
-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은 최고세율 25%의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세율 체계를 적용할 때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순소득 과세에 가까운 결과를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나라·지역과 유사하게 일단 183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머물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밖에 다른 기준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비거주자에게는 총소득 기준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
 - 다만 라부안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23)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es 2015, 2015, p. 21.

24) 말레이시아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sil.gov.my/bt_goindex.php?bt_kump=5&bt_skum=1&bt_posi=2&bt_unit=5000&bt_sequ=11, 2016. 4. 21 접속

마. 중국

- 거주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 4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부류에 대하여 서로 다른 4가지 종류의 과세범위를 적용하는 등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²⁵⁾
 - 체류기간 90일까지는 급여 상당액을 중국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과세함(조세조약에서는 대개 이 기간을 183일로 연장)
 - 체류기간이 90일(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183일) 이상 1년 미만일 때에는, 중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함
 - 체류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일 때에는, 중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과세되는 한편, 해외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함
 -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 납세자에 비하여 근로소득 공제에서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세율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함
 - 외국인의 경우 표준공제와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는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4,800위안으로서 내국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 3,500위안보다 많음
 -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할 때 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중국 근무에 따른 비용을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하는데, 이 항목은 위의 표준공제에 추가하여 허용되는 것임
 - 중국 이주에 따른 이주 비용, 주거비, 여행경비, 모국 방문 경비, 언어 교육 경비, 자녀교육 경비 등
 - 이 특정 비용 소득공제는 표준공제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것임

25) 중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법률회사 Desan Shira & Associates의 china-briefing 홈페이지 참조
<http://www.china-briefing.com/news/2015/01/28/paying-foreign-employees-individual-income-tax.html>, 2016. 4. 21 접속

3.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외국의 관련 과세제도를 조사해 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특별히 완화해 주는 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많지 않음
- 특별히 눈에 띄는 국가들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로서 전문가, 연구자 등과 일정소득 이상의 핵심요원들이 자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운영하고 있음
-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세부담이 높고 사회복지 혜택이 많은 고부담-고복지 국가들로서, 단기 체류자의 경우 세금은 많이 부담하는 한편 복지혜택은 많이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 덴마크 최고세율 55.794%,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약 7천만원
 - 스웨덴 최고세율 56.99%,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약 6천만원
 - 네덜란드 최고세율 52%,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약 6,400만원
 - 아일랜드 최고세율 47%, 최고세율 적용 기준 과세표준 4,500만원
- 이들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보면, 덴마크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26%)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급여의 일정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함
 - 스웨덴은 총급여의 25%, 네덜란드는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하며, 이때 비과세 소득은 사회보장기여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도 일부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이에 더하여 자녀의 초·중등학교 교육비의 소득공제가 허용됨
 - 아일랜드는 총급여가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를 소득공제함

- 적용대상은 대체로 연급여 1억~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임
 - 네덜란드는 급여기준이 약 6,700만원으로 낮은 편임
 -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 연구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자는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국적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비거주자였던 자가 자국으로 들어와 근로를 시작함으로써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됨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1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됨

-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 외국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아일랜드와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의 기업이 고용주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은 아일랜드 3년, 덴마크와 스웨덴 5년, 네덜란드 8년임

- 우리나라와 외국인재 유치에서 주요 경쟁대상이 되는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나 북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의 조세체계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북유럽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판단됨
 -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각 최고세율이 17%, 20%, 25%로 세율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과세환경이 우수한 편임
 - 그 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운영함
 - 홍콩은 개인소득세 평균세율은 최고 15%로 제한함(내·외국인에게 모두 적용)

- 싱가포르의 NOR(Non Ordinarily Residents) 규정, ARS(Area Representative Scheme)을 통해 과세기간 중 외국에서 근무함에 따른 급여를 싱가포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중국과 대만의 경우 홍콩 등에 비해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특정 비용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음

- 이주비용, 주거비, 여행경비, 모국 방문 경비, 자녀교육비 등
- 중국은 표준공제도 4,800위안으로, 일반적인 표준공제 3,500위안보다 많음

□ 이상의 논의한 다른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과세환경을 개선하여 세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
 - 부분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도 함
- 둘째,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경우 단기적인 체류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한편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제한되어 외국인 전문가 유치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과감한 세부담 절감 혜택을 제공함
 - 최고세율의 절반 이하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의 30% 정도를 비과세함
- 셋째, 북유럽 국가의 과세특례는 단기적 거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5년 내외의 단기간 동안 제공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들어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됨
 - 장기 거주자에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넷째, 제도의 도입 목적은 주로 전문가, 연구자, 경영진 등 국내에서 부족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지만, 적용대상 기준을 급여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문가, 연구자, 경영진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핵심요원으로 보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됨

- 다른 국가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아시아 주요국보다는 높은 편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감한 감면을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임
 -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북유럽 국가들의 관련 제도와 매우 유사함
 -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고세율의 절반 이하로 완화하며, 5년간 적용됨
 - 우리나라의 과세특례제도가 북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차이가 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거주자-비거주자 조건 대신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판정함
 -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의 시한이 없어 장기 거주자도 혜택을 받음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고용주에 대한 규정이 없음

I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I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 우리나라 제도 도입 이유와 다른 국가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음
 - 외국에서 거주하던 자가 단기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근무할 때 국내 거주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이주비용, 주거비, 자녀교육비, 언어 교육비, 기타 현지 적용에 필요한 비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 단기적으로 거주할 때 국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자에 비해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세부담이 높음
 - 우리나라의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신고 결과를 보면 연간 총급여가 4천만~1억원인 경우 실효세율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2.3~2.8%포인트 높음²⁶⁾
 -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노년기에 제공하는 복지 등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많으며, 그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에 장애가 된다면 조세지원을 통해 그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국의 과세현황과 복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율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과감한 조세지원을 통해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함

26) 앞의 <표 II-3> 참조

- 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과세환경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은 외국인에게 특별하게 큰 지원을 하지 않음
 - 타이완과 중국에서는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통해서 비거주가 국내로 이주하여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경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경비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우리나라는 대폭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세부담이나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원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의 실효세부담이 내국인에 비해 높음
 -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이 매우 양호한 편은 아님
 -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전문가, 연구자, 경영자 등이 근무함에 따른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근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희석된다고 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조세지원이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현재의 과세특례와 그에 따른 세수손실은 조세지원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우발적인 소득(windfall income)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과세특례제도의 외국인 유치 효과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분석함

2. 지원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본절(제2절)에서는 지원대상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지원규모 및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함
 - 그리고 제4절에서는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에 대해 논의함

-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음
 - 국적이 외국인이어야 함
 -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데, 고용주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근무하는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17% 단일세율이 실질적으로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있으려면 연급여가 1억 5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됨

가. 적용대상 외국인의 정의

- 지원 대상 설정의 적절성 점검과 관련된 쟁점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이라는 제약이 적절한지?
 - 국내 근무자와 고용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되는지?
 - 소득수준, 근무 직종, 자격 등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이 적절한지?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규정하여 자연스럽게 국적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²⁷⁾
 - 한편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외국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과세의무를 판단함
 - 1년 중 183일 미만의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제한적인 납세의무만 부담하며, 183일 이상 근무한 자는 거주자로 보아 완전한 납세의무를 부담함
 - 단, 우리나라의 경우 183일 이상 5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납세의무만 가짐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가 외국에 거주하던 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활동

27) 시행령 제16조의2

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국적보다는 실제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인에게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음
 - 스웨덴: 과거 5년간 거주자인 적이 없을 것
 - 덴마크: 외국에서 고용될 것
 - 네덜란드: 네덜란드로부터 일정한 거리(1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할 것
 - 아일랜드: 아일랜드와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기업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된 이후에 아일랜드로 이주할 것

나. 고용주에 대한 요건

- 국내 근무지와 고용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일부 규제를 하고 있음
 - 덴마크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 그 외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스웨덴도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제한함
 - 네덜란드는 외국에서 채용되어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음
 -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아일랜드에서 자신을 고용한 외국기업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의 국내 계열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즉, 국내 기업이 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우리나라도 고용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 세금 감면으로 인해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그 중 일부가 법인세로 환수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 외에 연구자, 교수 등 전문가의 국내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를 지원할 목적이 있다면 덴마크와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 조합 등 적절한 기관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 소득 수준, 직종 등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 소득 수준이나 직종,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 그 외 자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덴마크 등 앞서 검토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모두 소득금액 또는 연구자, 전문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함
- 소득의 일정부분을 비과세하거나 소득공제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자체가 소득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대체로 1억~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부담 절감 효과가 나타남
 - 조세지원 대상인 핵심요원(key personnel)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제시한 북유럽 국가들도 연간 총급여 1억~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함
- 지원대상을 특정 업종이나 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음
 -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직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조세지원에 따른 세수손실의 반대급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원대상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세수손실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재원으로 특정한 지원대상에게 비교적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특정한 자격을 지정하고,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자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격 기준을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최근에 발전하는 디지털경제에서 제조업, 연구자 등과 같이 전통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핵심요원의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업종이나 직종을 특정하지 않고, 소득기준 또는 현재의 우리나라 과세 특례제도와 같이 실효세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음
 - 행정이 간편하며, 기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핵심요원인지 여부는 기업이 판단하도록 시장에 맡긴다는 장점이 있음
 - 기업의 의사결정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직종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조세지원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북유럽 국가의 제도 발전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국내에 연구자, 전문가, 경영자 등 핵심요원이나 국내에 희소한 능력을 갖춘 노동력에 한하여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2012년을 전후로 대부분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모두 핵심요원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자가 많은 업종을 보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1,042명으로 가장 많음
 - ‘전문서비스업’은 658명인데, 주로 변호사, 경영컨설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구성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80명임

-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74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74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4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3명의 순임

- 그 외 도소매업은 ‘상품종합도매업’이 51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금융보험업의 경우 ‘금융업’ 300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201명, ‘보험업’이 111명임
 - ‘항공운송업’(105명), ‘종합건설업’(78명), ‘호텔업’(45명) 등도 비교적 과세특례 대상이 많은 분야임

- 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제한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 순수한 내국인 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대한 수요가 더 크며,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²⁸⁾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음
 - 외국인 전문가의 국내 근무를 지원하는 이유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내국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 순수한 내국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
 - 조세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사업 환경을 내국인 기업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도, 내국인 기업에는 제공되지 않는 조세감면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사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예외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지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함: 최기호(2014), 강상태·전병욱(2012), 전태용·변용환(2010), 이성봉(2010), 안종석·최준욱(2003),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등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할 경우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함²⁹⁾

28)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참조

29)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본장 제4절 ‘재정지출 및 다른 조세지출제도와와의 중복성 검토’ 참조

3. 지원 규모와 방법의 적절성

가. 지원 규모의 적절성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지원 규모 및 방법의 적절성과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7% 단일세율이 적절한 규모의 지원인가?
 - 5년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 2014년 이전부터 근무한 자는 기한 없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 17% 단일세율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곤란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유사한 단일세율제도를 적용하는 덴마크의 경우 최고세율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26%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고세율 38%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17%를 적용함
 - 외국인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소득의 25~30%를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 30% 소득공제제도가 있었는데,
 - 이 제도와 비교하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17% 단일세율이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크지만 그 소득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7% 단일세율이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적음
 - 2010년 30%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된 것을 전후하여 1억원~3억원 사이의 17%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 소득구간에서는 30%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17% 단일세율제도가 더 유리함을 시사함
 - 홍콩(평균세율 최고 15%) 싱가포르(법정 최고세율 20%), 말레이시아(법정 최고세율 25%, 라부양 비과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과세환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17% 단일세율이 과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없음

- 한편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간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공제한

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17% 단일세율이 과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소득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3%포인트를 상회하지 않음
- 한편 총급여 3억~5억원 구간에서는 17% 단일세율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9.9%포인트이고,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13.2%포인트,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6.8%포인트로 그 격차가 커짐³⁰⁾

□ 최초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5년간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도 3~8년간 지원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 거주하던 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앞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4개의 국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2개 국가에서는 5년, 나머지 2개 국가에서는 각각 3년과 8년을 시한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5년 기한이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음
-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에서도 5년 넘게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주 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5년 이내 거주자는 비영주거주자로 보아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과 세부담, 복지 혜택 등에 있어 거주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14년 이전부터 근무한 자에 대한 무기한 적용은 과도한 혜택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감면규모를 축소하여 5년으로 맞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0)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은 <표 II-3> 참조

나. 지원방법의 타당성

- 17% 단일세율제도와 30% 수준의 소득공제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이 논리적으로 더 적합함
- 한편, 제도의 단순성 관점에서 17% 단일세율제도가 더 우수함
 - 또한 인근의 경쟁국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과세환경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인근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장점이 있음
- 이와 같이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수년간 유지해 온 단일세율제도를 과거에 폐지한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기보다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현재의 단일세율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재정지출 및 다른 조세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 2014~2016년에 시행된 정부의 보조금 사업 목록을 검토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지원 중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달러 이

상인 경우)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②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임(시행령 제16조 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9조 ②)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감면기간은 2년이고, 이 제도의 일몰기한은 2018년임
- 조세지출규모는 2014년 211억원임

□ 2015년 이전에는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학사 중 3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외국인기술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2015년에 제도를 개편하여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그 대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제18조에서는 특정 계약에 의한 경우와 특정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데 비해 제18조의2에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제약이 없음

- 제18조의2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세부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18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총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제18조의2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제18조와 제18조의2의 차이를 보면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대상의 범위가 좁고, 적용기한도 짧으나,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혜택은 제18조가 큼
 - 앞의 <표 II-3>에서 살펴본 외국인 근로자 실효세율과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의 격차를 보면, 제18조의 2에 규정된 17% 단일세율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18조와 제18조의2의 규정이 각각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하기 시작한 2년과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음 2년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 3년은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음

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1.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조세지원 현황

가. 주요 목표 그룹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황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성과지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실적이 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의하면, 이 제도는 해외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정 체류자격(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목표 그룹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직업(E-7)
- 위에서 열거한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등록자 수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2년에 31,315명에서 2005년 30,892명으로 3년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13% 증가하여 34,914명이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V-1>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등록자 수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정비자 ¹⁾	34,914	40,564	43,860	52,002	55,896	58,874	61,930	64,277	63,872
증가율 ²⁾	13.0	6.2	8.1	18.6	7.5	5.3	5.2	3.8	-0.6

주: 1) 주재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직업(E-7)

2)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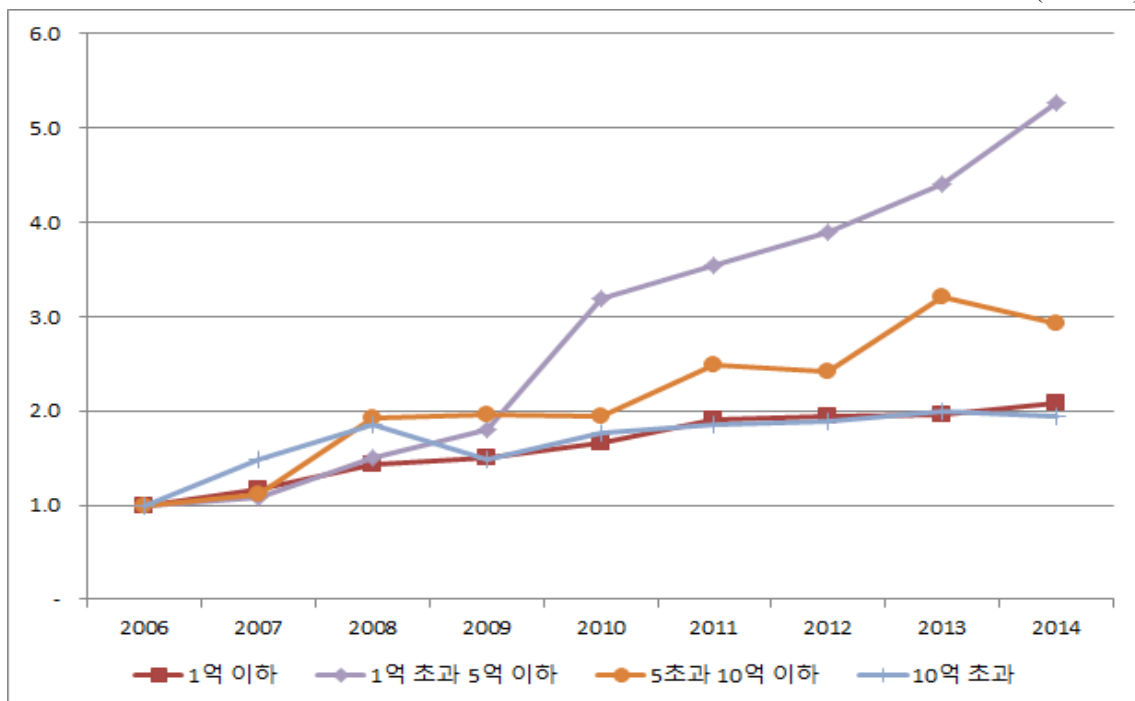
- 2013년에 64,277명으로 2006년의 1.8배 수준이 되었으며, 2014년에는 400명 정도 줄어들었음
-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가 계속됨

□ [그림 V-1]에서는 총급여 수준별로 2006년 이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의 변화를 정리하였음

- 각 연도의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2006년의 외국인 근로자 수로 나눠서 배수를 정리한 것인데, 1억원 이하 구간과 10억원 추가 구간은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서 공히 2014년에 2006년의 2배 수준이 되었음
-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주요 타깃이 되는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억~5억원 구간은 2014년에 2006년의 5.3배가 되고,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2.9배가 되었음
- 앞서 <표 II-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2억원 근로자의 57%가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억~10억원 구간에서는 90% 내외가 과세특례 적용자임

[그림 V-1] 급여수준별 연말정산자 수 변화(2006년 대비 비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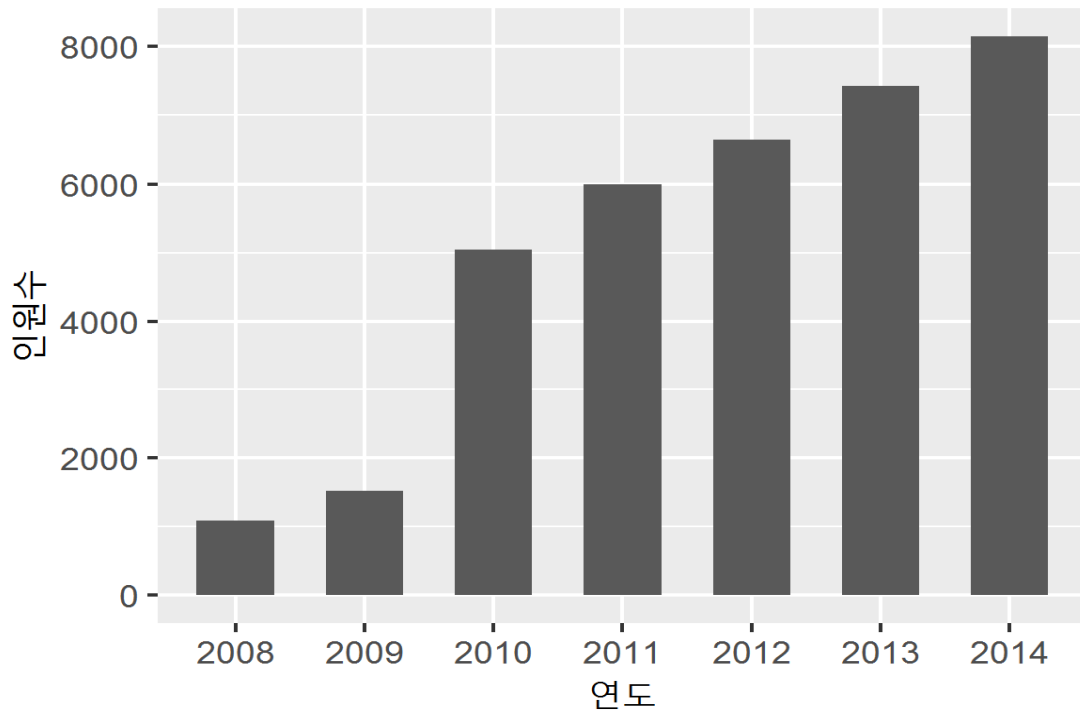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연도별 지원현황

- 연도별 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총 1,07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 제도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14년에는 8,147명이 본 제도를 이용하여 기간 중 이용자 수가 약 7.5배가량 증가하였음
- 2009년 1,511명 수준이었던 이용자 수는 2010년 5,04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12년 6,642명, 2013년 7,431명 등으로 증가하여 2012년 이후에도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는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까지 존재하던 외국인근로자 국내근로소득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던 제도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그림 V-2] 연도별 이용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 지원자들의 연도별 평균 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약 5억 8,5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4년 약 2억 6,500만원으로 낮아짐

- 2009년 약 4억 7,600만원 수준에서 2010년 2억 7,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뒤 최근까지 약 2억원 후반대의 평균소득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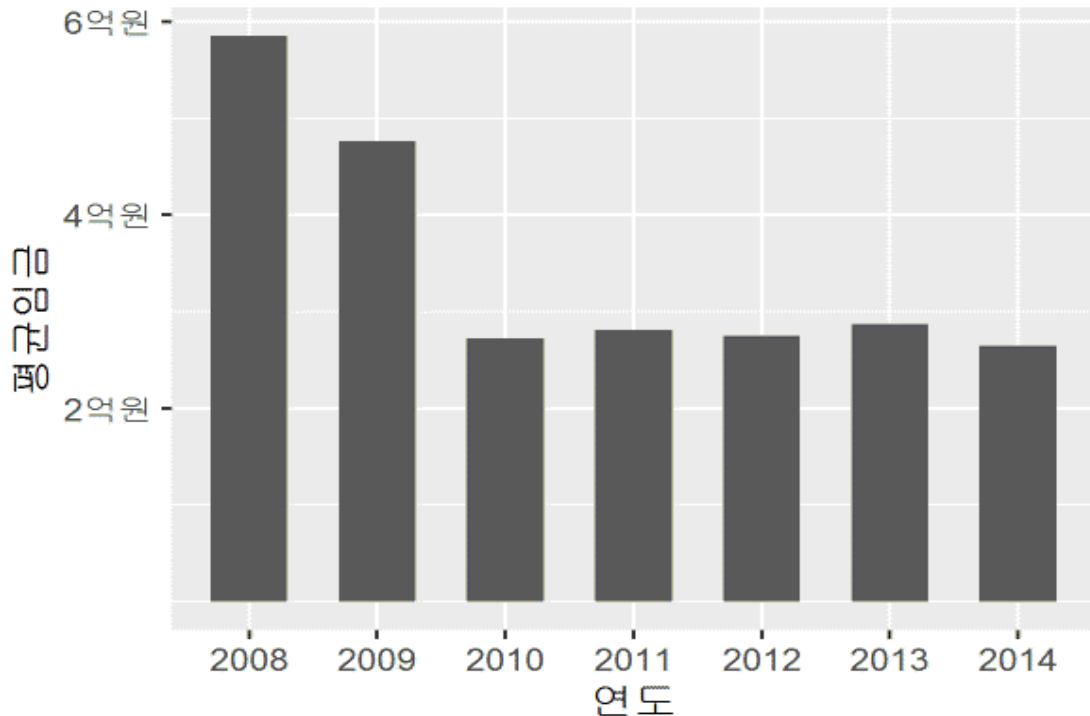
<표 V-2> 연도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단위: 명, 억원, %)

연도	인원		평균소득	
	인원수	전년대비 증감률	1인당 평균소득	전년대비 증감률
2008	1,079	-	5.9	-
2009	1,511	40.0	4.8	-18.6
2010	5,044	233.8	2.7	-42.8
2011	5,992	18.8	2.8	3.1
2012	6,642	10.8	2.7	-2.3
2013	7,431	11.9	2.9	4.5
2014	8,147	9.6	2.6	-7.7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그림 V-3] 연도별 평균소득 현황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다. 산업별 지원현황

- 산업별 지원자들의 분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의 업종·업태 구분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지원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음

1) 6대 분류별 지원자 분포

- 지원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본 제도의 이용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08~2014년의 기간 중 전체 이용자 중 약 2만 2,000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61.5%를 차지함
 - 제조업은 약 7,400명으로 약 20.7%를 차지함

<표 V-3> 2008~2014년도 총 산업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단위: 명,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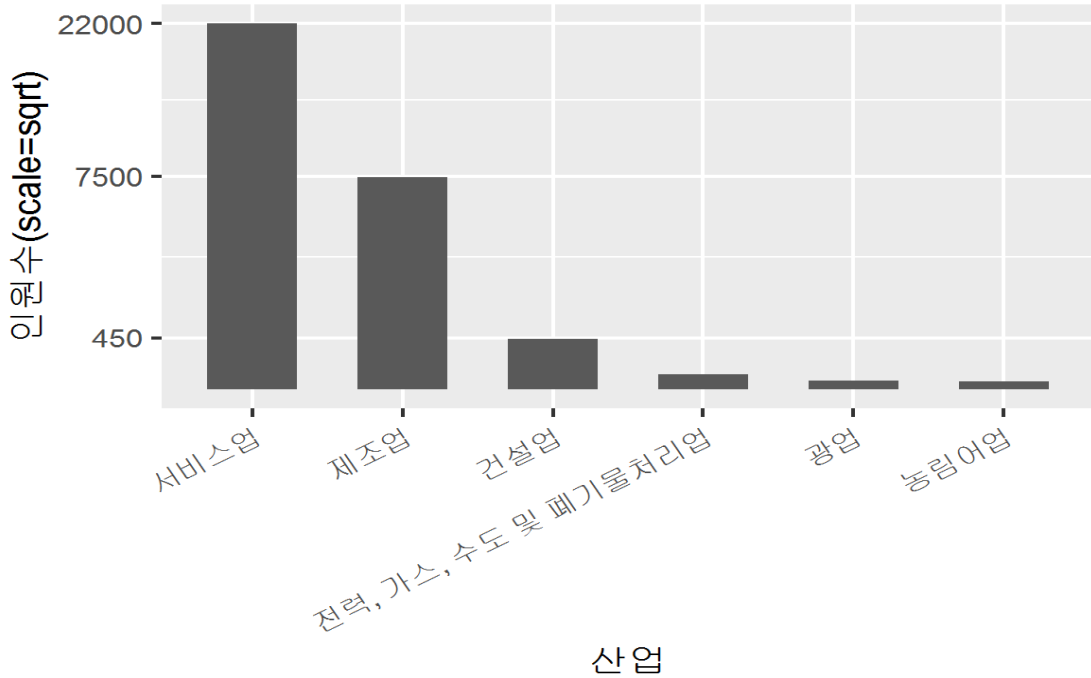
연도	인원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건설업	440	1.2	2.5
광업	13	0.0	6.0
농림어업	11	0.0	1.3
서비스업	22,055	61.5	3.2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처리업	38	0.1	1.7
제조업	7,434	20.7	2.6
미분류	5,855	16.3	2.3
합계/ 평균	35,846	100	2.9

출처: 국세청 자료, 저자작성

- 평균소득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소득이 약 3억 2천만원 수준임
 - 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제조업의 평균소득은 약 2억 6천만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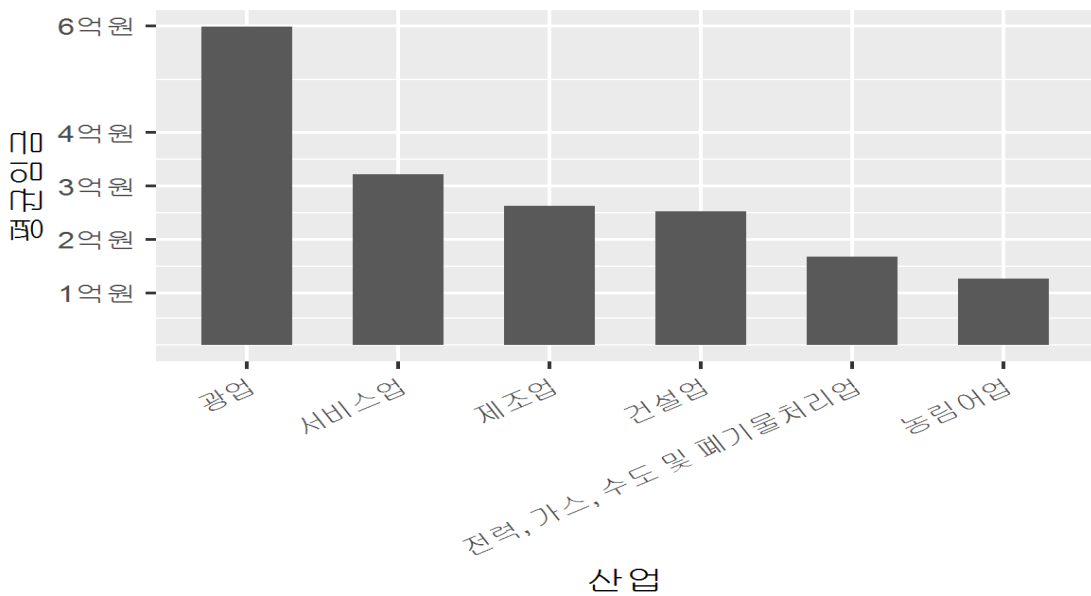
- 광업의 경우 평균소득이 약 6억원가량이나 기간 중 전체 이용자 수가 13명으로 이용자수의 비중은 미미함

[그림 V-4] 산업별(6개 분류별) 인원 수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그림 V-5] 산업별(기본분류 6개 부문) 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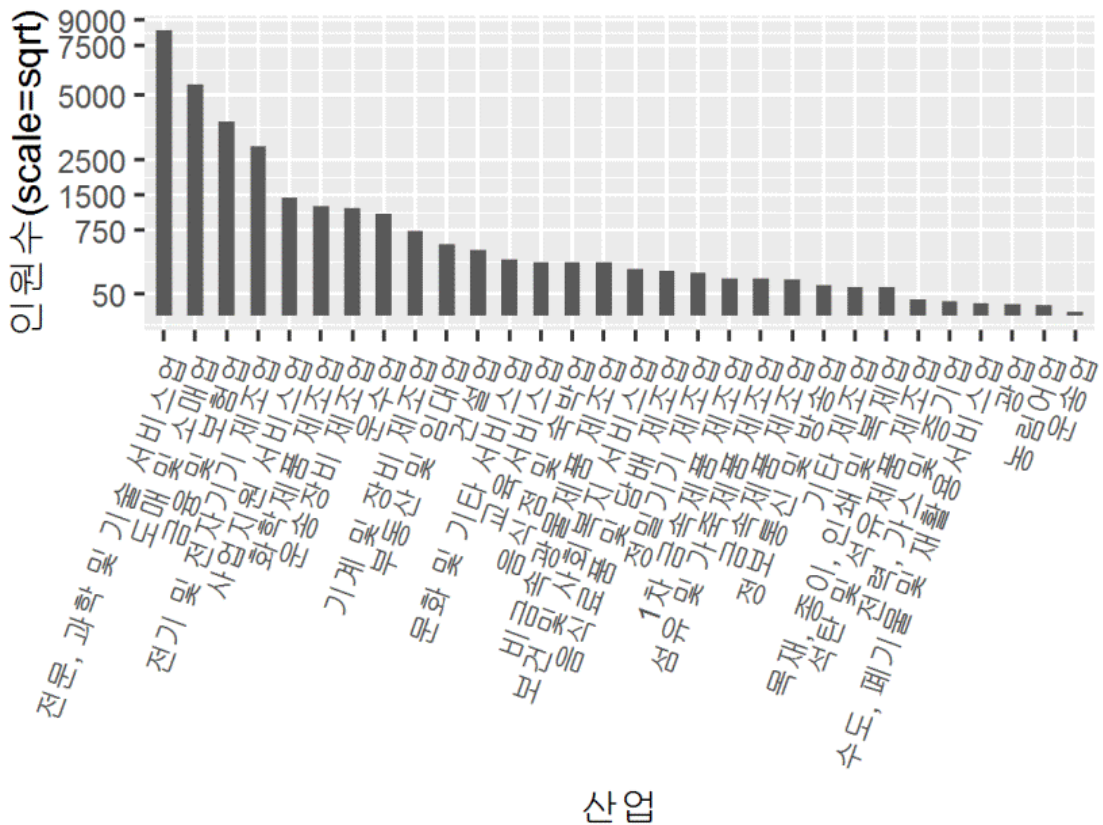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2) 통합대분류 30개 부문

- 산업을 보다 세분하여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등의 산업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산업별 자세한 수치는 부록의 <표 A-1> 참조)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기간 중 8,367명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전체 이용자 수의 약 28%를 차지함
 -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약 18%), 금융 및 보험업(약 1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약 10%) 순으로 나타남

- 유의미한 수의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볼 때 금융 및 보험업의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그림 V-6] 산업별 인원 수(통합대분류 30개 부문)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표 V-4> 상위 10개 업종의 지원대상 인원수, 평균소득(2008~2014년)

(단위: 명, 원)

통합대분류	업종	인원수	평균소득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종합도매업	2,732	260,230,96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 환경컨설팅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2,675	259,224,537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 텔레비전제조업	1,706	292,113,83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 · 공공관계서비스업	1,447	470,004,205
사업지원 서비스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1,135	263,982,862
금융 및 보험업	· 증권중개업	1,047	564,848,023
금융 및 보험업	· 국내은행 · 외국은행	949	425,328,88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919	369,029,7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832	225,697,04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전자집적회로	596	230,337,608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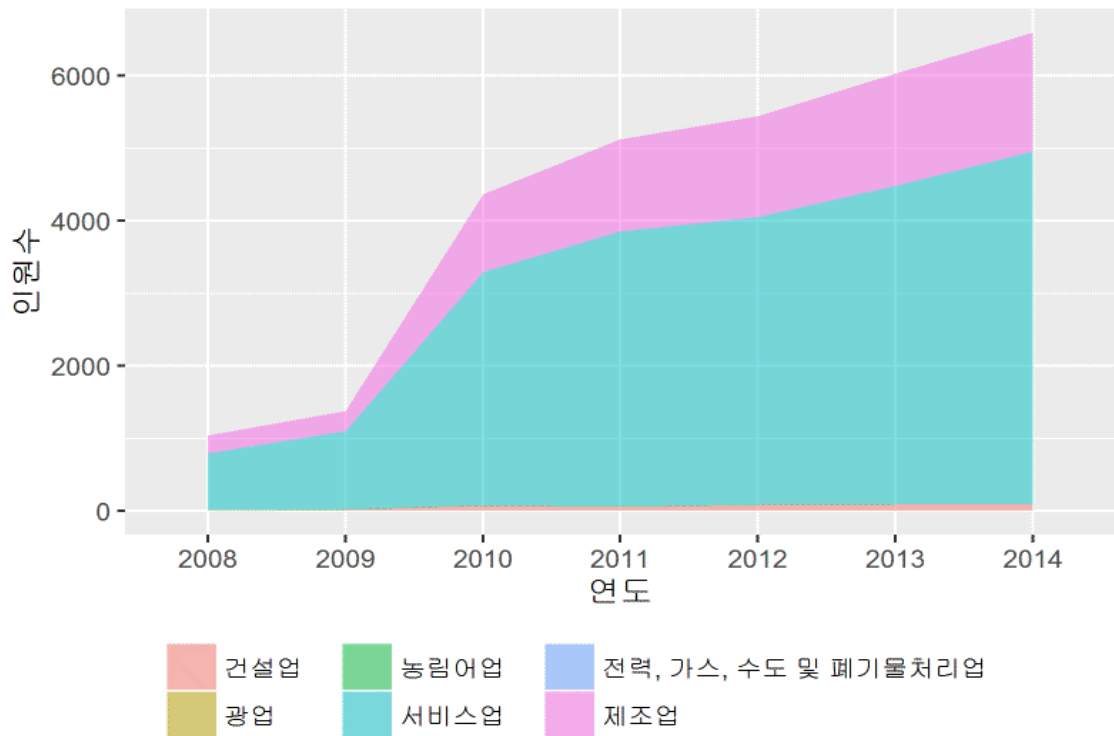
라. 연도-산업별 지원현황

1) 6대 분류별 지원자 분포

- 연도-산업별(6대 분류)로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에는 전체 이용자 중 781명이 서비스업 그리고 248명이 제조업 종사자로 각각 약 75%, 24%의 비중을 차지함
- 2014년에는 전체 이용자 중 4,859명이 서비스업, 그리고 1,631명이 제조업 종사자로 각각 74%, 25%의 비중을 차지함
- 특히, 기간 중 전체 이용자 수 증가분인 5,546명(미분류 제외) 중 서비스업은 4,078명(73%), 제조업은 1,383명(25%)을 차지하여 전체 증가 인원의 약 98%가량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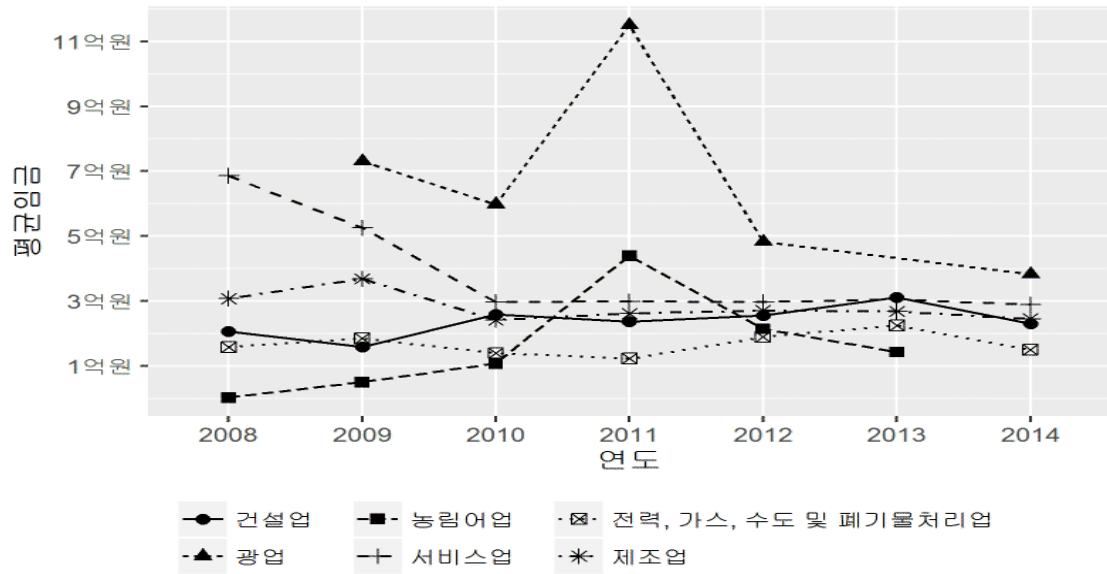
[그림 V-8] 연도-산업별 인원수(6대 분류)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 연도-산업별(기본분류) 평균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간 중 평균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2008년 약 6억 8천만원 수준에서 2014년 약 2억 9천만원 수준으로 하락함
 - 제조업의 경우 2008년 약 3억원 수준에서 2014년 약 2억 4천만원 수준으로 하락함

[그림 V-9] 연도-산업별 평균소득(6대 분류)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2) 통합대분류 - 5대 산업

□ 통합대분류 기준으로 인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산업은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도매 및 소매업, 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4) 금융 및 보험업, 5)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이들 5개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간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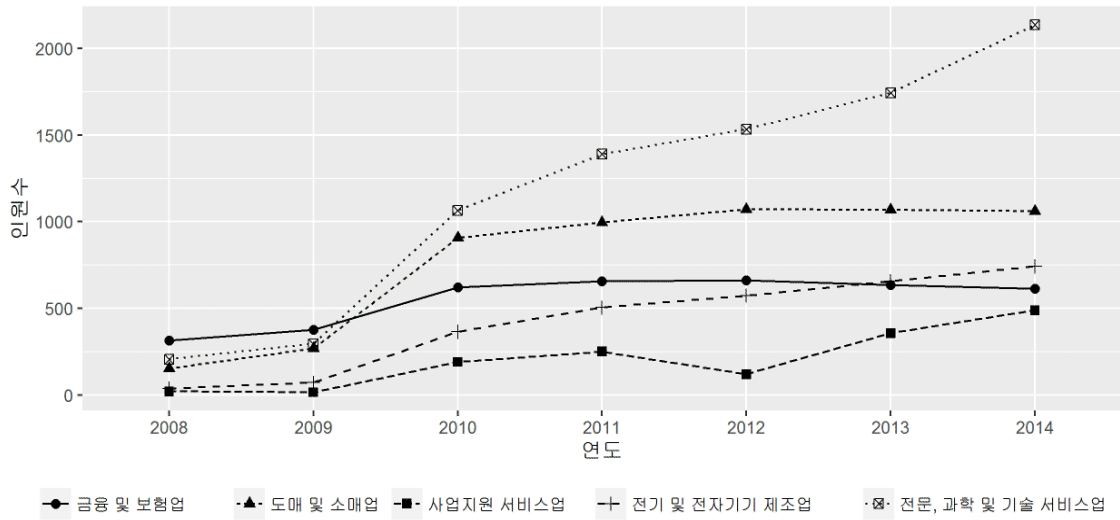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2008년 206명에서 2014년 2,135명으로 약 10.4배 증가함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08년 154명에서 2014년 1,060명으로 약 6.9배 증가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8년 316명에서 2014년 613명으로 약 1.9배 증가함

□ 5개의 통합대분류의 기간 중 평균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5개의 산업 중 기간 중 가장 평균소득이 높았던 금융 및 보험업은 2008년 약 8억 3천만원 수준에서 2014년 3억 7천만원 수준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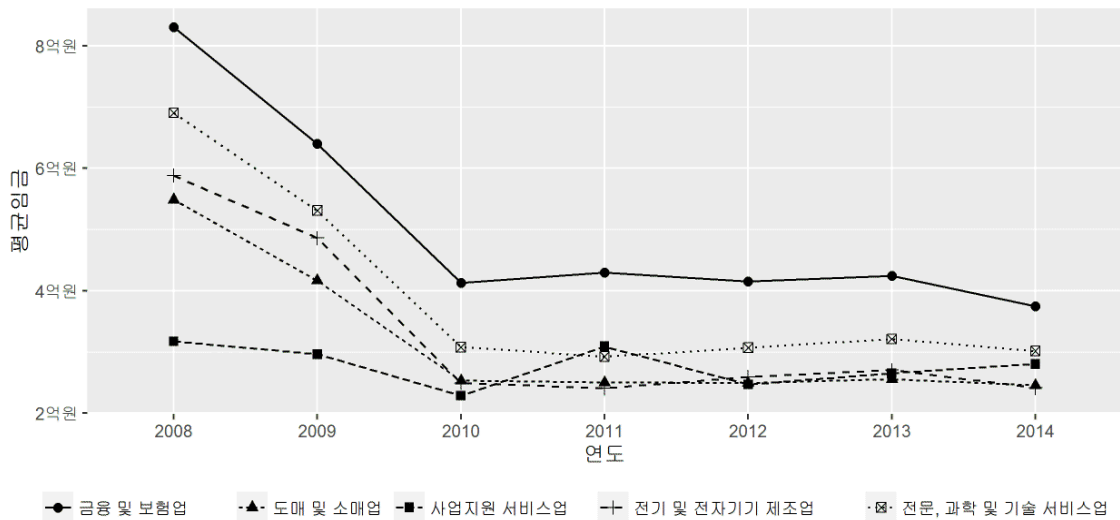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등에서 기간 중 평균소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V-10] 연도-산업별 인원수(5대 통합대분류)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그림 V-11] 연도-산업별 평균소득(5대 통합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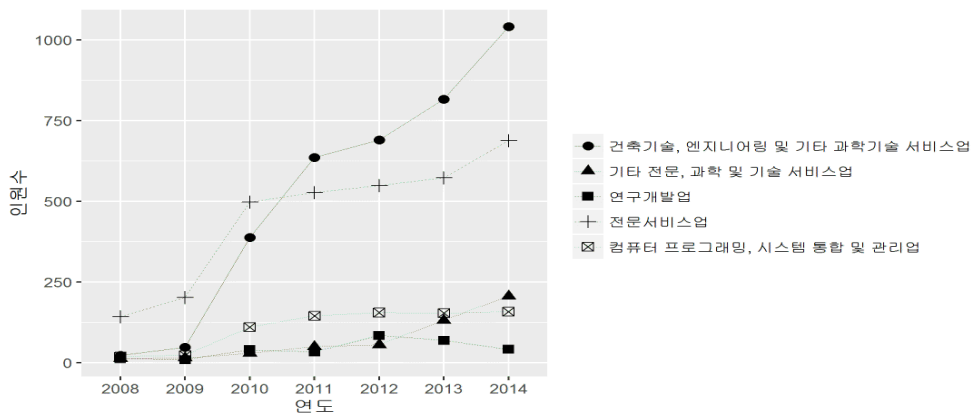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연도별 현황

-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조세지원 혜택을 받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본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2008년 22명에서 2014년 1,042명으로 증가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2008년 18명에서 2014년 158으로 증가함
- 연구개발업은 2008년 12명에서 2014년 41명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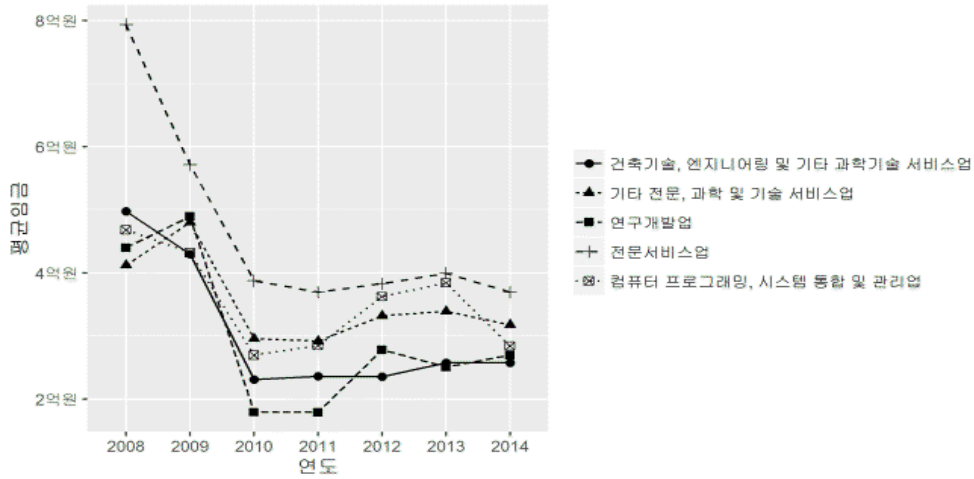
[그림 V-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인원 수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내 업태별 평균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 중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전문서비스업이 2014년 기준 약 3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V-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평균소득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표 V-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업종별 적용대상 인원 및 평균소득

(단위: 명, 원)

업태	업종	인원수 (전기간)	평균소득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75	259,224,537
전문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 · 공공관계서비스업	1,447	470,004,205
전문서비스업	· 변호사업	919	369,029,74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832	225,697,04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78	313,598,8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2	331,316,256
전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6	326,927,722
연구개발업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88	258,359,042
전문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광고업	177	273,545,948
전문서비스업	· 공인회계사업	118	445,003,800

출처: 국세청 제공, 저자작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내 세부 업종들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변호사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의 순으로 본 제도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마. 지원 대상자의 특징

- 이상에서 살펴 본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본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내에서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2014년 기준 이용자들의 전체 평균소득은 약 2억 6천만원 수준이며, 서비스업 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받음
 - 통합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있음
 - 이러한 정책은 고급 인력의 국내 유입이 고급 기술의 전파,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양(+)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에 기반함
- 본 제도가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학력 노동자의 국제 이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실제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함

가. 선행 연구

- 노동력이 국제 이주를 할 때 거주국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국제 이주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기대소득 증대: 출생국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영위하는 거주국으로의 이동
 - 거주국의 이민정책: 고급 인력에 대해 보다 호혜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할 경우 고학력 이민자의 비중이 증가함
 - 기존에 진출한 이민자 집단: 특정 거주국에 자신과 같은 출생국 출신의 이민자가 많이 존재할 경우 이민의 유인이 상승
 - 출생국과 거주국 간의 문화적 동질성: 출생국과 거주국이 동질적인 언어 및 문화를 지니고 있을 경우 이민의 유인이 상승
 - 이민에 따른 비용: 이민을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민정책으로 인한 고정비용이나 주기적인 본국 방문에 따른 가변비용(주로 두 국가간의 거리를 통해 측정되는)이 클수록 이민 유인이 감소

<표 V-6> 이민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연구	분석대상국	사용데이터	주요인
Van Dalen et al. (2005)	북아프리카 5개국	서베이 자료	- 기대소득 증가
Antecol et al.(2003)	호주, 캐나다, 미국	3국의 Census 자료	- 출생국과의 거리 - 기존의 이민자 집단 - 이민정책
McKenzie and Rapoport(2010)	미국-멕시코	서베이 자료	- 기존의 이민자 집단의 네트워크 효과
Mayda(2010)	OECD 국가로의 이민	OECD data from 1980 to 1995	- 1인당 gdp - 거리 - 문화적요인 - 이민정책

- 노동력의 국제 이주에 관한 통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노동력의 교육 수준별 이주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으나 최근들어 여러 연구들에서 고학력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국제 이주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바 있음

- Beine et al.(2008): 소규모 국가에서 고급 인력의 유출비율이 높게 나타남
 - Docquier et al.(2007): OECD 국가들과 인접한 소규모 국가들에서 고급인력의 유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Gibson and McKenzie(2011): 이주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보다 취업 가능성, 연구환경 등의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나타남
 - 신상화(2016): 거주국 결정에 있어 경제적 보상의 역할이 제한적인 반면, 지리·문화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음
 - 특히,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경제적 보상에 비해 지리·문화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본 제도는 고학력 외국인 인력의 세후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정책적 수단은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경제적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Van Dalen et al.(2005), Mayda(2010) 등에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음
 - 하지만, 여타의 결정요인들에 비해 그 효과가 작다는 연구들 또한 존재하기에 (Gibson and McKenzie 2011; 신상화 2016)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유입 효과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하에서는 본 제도로 인해 실제 고급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었는지를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본 제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관심사항인 유입된 고급 외국인 인력의 양(+)의 경제적 외부효과 존재 여부는 유입된 외국인들이 소속된 단체 혹은 기업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들을 필요로 하기에 구체적인 분석은 어려운 실정임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업별/연도별 당기순이익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여타의 기업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부족하기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여부만을 점검함

나. 분석 자료

- 본 세제지원으로 인해 고급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의 경우, 특정 외국인이 특정 단체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행위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 전략을 수립함
 - 특정 국내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특정 연도에 크게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가 본 제도에 기인하는 것인지 해당 국내 법인의 경영활동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함

-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08~2014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업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신청한 자료들 중 세부기업의 과세관련 정보들, 즉,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총액, 총부담세액 등은 제공받지 못함

<표 V-7> 국세청 요청자료 형태

신고연도	과세기간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식별번호) *	업태	세제혜택 인원수	평균 근로 소득 (세제혜택 대상)	해당 사업체의 일반 자료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세액 총액	총부담 세액	자산 총계	당기 순이익	총 근로자 수

주: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총액, 총부담세액 등의 자료는 입수하지 못함

다.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1)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치 효과

- 분석의 대상이 되는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본 제도의 설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
 - 우선, 2010년까지 적용되었던 국내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을 소득 공제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폐지되었음
 - 2010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 제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국내 근로소득의 30% 상당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2011년부터 소득공제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단일세율제도만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냄
 - 다음으로, 단일세율이 기간 중 두 번 변경되었음
 - 2008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17%였으나
 -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5%로 인하되었고
 -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다시 17%로 인상되었음

<표 V-8> 분석 기간 중 제도 변화(2008 ~ 2014)

(단위: %)

연도	단일세율	소득공제 방식 존재여부
2008	17.0	○
2009	15.0	○
2010	15.0	○
2011	15.0	×
2012	15.0	×
2013	17.0	×
2014	17.0	×

출처: 저자작성

- 분석 대상기간 중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본 제도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 외에 고려할 변수로 소속 기관의 해당 연도의 경영활동 변수들을 꼽을 수 있음
 - 이는 특정 기관의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감이 본 세제 혜택 때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가령, 본 제도의 혜택이 증가한 Y연도에 특정기업 X의 고소득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할 때 이것이 기업 X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연도의 세제 혜택 증가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존재
 - 따라서, 특정 연도의 기업별 경영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속한 외국인 인력 수의 증감이 본 제도의 혜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분석 모형은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F_{hiring_{i,t}} = \beta_1 Wage_{i,t} + \beta_2 l_{sales_{i,t}} + \beta_3 TotalHiring_{i,t} + D_{deduction} + D_t + D_{산업} + a_i + error_{i,t}$$

- $F_{hiring_{i,t}}$ 는 t 연도에 기업 i에서 본 제도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 $Wage_{i,t}$ 는 t 연도에 기업 i 신청자들의 평균 세후소득으로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평균소득에 연도별 단일세율을 반영한 값
 - $l_{sales_{i,t}}$ 는 기업 i의 t연도 매출액의 자연로그값
 - $TotalHiring_{i,t}$ 는 기업 i의 t연도 총고용인원
 - $D_{deduction}$ 은 30% 소득공제 제도가 존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D_t 와 $D_{산업}$ 는 각각 연도와 산업 더미변수를 의미함
 - a_i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기업의 고유 특성을 의미
 - 본 제도의 외국인 유입 효과가 존재한다면 β_1 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고, 그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 아래의 표는 위의 모형을 1) pooled regression 2) 고정효과 모형 3) 임의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음
 - pooled regression은 위 모형의 a_i 가 존재하지 않거나 관측가능할 경우 적절한 모형임

- 하지만, 기업의 외국인 고용량에 있어 경영자의 성향, 해당 기업이 하는 업무의 특성 등 관측하기 어려운 개별 기업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 이러한 경우 위의 모형은 크게 고정효과(fixed effect model) 혹은 임의효과(random effect model)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함
 - 고정효과 모형은 a_i 변수가 여타의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타당한 모형이며,
 - 임의효과 모형은 a_i 변수가 여타의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적절한 모형임
-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고유 특성이 해당 기업의 매출액, 총고용수준 등의 다른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정효과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비교의 목적으로 고정효과 모형 외의 다른 방법들 역시 함께 보고함

<표 V-9> 분석 결과(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 효과)

설명변수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세후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매출액(로그)	0.086* (0.045)	0.897*** (0.152)	0.103* (0.053)
총고용인원	0.002*** (0.000)	0.004*** (0.000)	0.001*** (0.000)
deduction(더미)	-1.347*** (0.504)	-2.803*** (0.444)	-2.879*** (0.411)
관찰치수	8,292	8,292	8,292
R-squared	0.310	0.09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업종고정효과	YES	YES	YES
업체수		2,775	2,775

주: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 p<0.01, ** p<0.05, * p<0.1
출처: 저자작성

- 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기업에서 취할 수 있는 세후소득과 해당 기업의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수 사이에는 특별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는 세후소득과 종속변수 간에 0의 값에 매우 근사한 미미한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 Pooled OLS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에서도 세후소득 변수는 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Pooled OLS에서는 고정효과 모형과 유사하게 10% 수준에서 유의한 0의 값에 매우 근사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기업의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 고용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해당 기업의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분석됨
 -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 매출액의 자연로그값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약 0.89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Pooled OLS와 임의효과 모형에서도 계수값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음

- 기업의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는 기업의 총고용인원을 꼽을 수 있음
 - 고정효과 모형은 전체 고용인원이 약 250명 증가할 경우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Pooled OLS와 임의효과 모형은 각각 전체 고용인원 약 500명, 1,000명이 증가할 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밖에 국내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존재했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연도들에 비해 해당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 수와 세후소득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매출액 그리고 총고용인원을 통제할 경우 세후소득의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인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것임
- 이는 고급 외국인 인력의 세후소득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유입을 촉진시키려는 본 제도의 효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함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해당 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주어진 자료만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국세청 자료는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존재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조군을 설정하기 어려움
 -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연도별 거시경제적 수준(연도 더미), 산업별 더미 변수만으로 기업의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음

-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profit_{i,t} = \beta_1 Fhiring_{i,t-1} + \beta_2 lsales_{i,t-1} + \beta_3 TotalHiring_{i,t-1} + a_i + D_{산업} + D_t + error_{i,t}$$

- $profit_{it}$ 는 i 기업의 t 연도 당기 순 손익의 자연로그값을 나타냄
- $Fhiring_{i,t-1}$ 는 t-1 연도에 기업 i 에서 본 제도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 $lsales_{i,t-1}$ 는 t-1 연도에 기업 i 의 매출액의 자연로그값
- $TotalHiring_{i,t-1}$ 는 t-1 연도에 기업 i 의 총고용인원 수
- 이상의 모형 설정은 전연도의 고급 외국인 인력의 규모, 매출액, 총고용인원과 당해연도의 순손익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것임
 - 당기의 순손익은 당기의 변수들이 아니라 전년도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임

<표 V-10> 분석결과(당기순손익과 고급 외국인 인력규모의 관계)

설명변수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num_lagged	0.000 (0.002)	0.001 (0.002)	0.000 (0.002)
lsales_lagged	0.840*** (0.014)	0.908*** (0.040)	0.840*** (0.014)
totalHiring_lagged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찰치수	3,904	3,904	3,904
R-squared	0.753	0.196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업종고정효과	YES	YES	YES
기업수	1,557	1,557	1,557

주: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 p<0.01, ** p<0.05, * p<0.1
출처: 저자작성

- 위의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전년도 고급 외국인 인력의 규모와 당해연도 순손익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
 - Pooled OLS, 고정효과, 랜덤효과 모형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여타의 독립변수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전년도 매출액 규모였음
 -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전년도 매출액의 로그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당해연도 순손익이 0.9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Pooled OLS와 임의효과 모형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값은 단순히 전년도의 고급 외국인 인력의 수와 현재연도의 순손익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입효과는 기업 경영 및 혁신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내에서 그러한 대리변수를 찾을 수 없었음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가 재정 세입에 미친 영향

- 앞의 <표 II-9>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조세지출 규모를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조세지출 규모는 2005년 65억원에서 2014년 1,628억원으로 9년 사이에 25배로 증가하였음
 - 특히 2008~2011년에는 3년 사이에 271억원에서 1,997억원으로 3년 사이에 6배로 증가하였으며, 증가 규모는 1,726억원으로 증가분이 2014년 조세지출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임
 - 이 기간의 조세지출 규모 증가는 2008년에 근로소득 30% 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어 그 혜택을 받던 자들이 대거 단일세율제도로 이동한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지원대상 인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 기간 중에 특례세율이 15%에서 17%로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추계한 것으로서, 매년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와 소득세 기본세율체계를 과세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총액에 적용하여 특례 적용 전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임
 - 즉, 전체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을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조세지출 규모는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음

VI. 제도 개선방안



VI. 제도 개선방안

1.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이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함으로써 인해 특별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
 - 이러한 비용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지
 -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 위의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음
 - 앞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근로자가 거주지를 옮겨 다른 국가에서 단기간 생활할 때는 이주비는 물론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며, 장기 거주자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세부담이 많은 편임
 -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소득계층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언어장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편은 아님

-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근무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연구자, 경영자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국내 근로자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며, 국내에

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대부분(95%)은 연급여 4천만원 이하의 단순노동인력이 차지함

□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 V 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인력을 채용한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는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세후소득 수준보다 세후소득이 아닌 기업별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별 고급 외국인 인력의 수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고용인원 수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별 매출액 규모와 고용인원 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고급 외국인 인력에 주어지는 세후소득의 규모와 기업별 고급 외국인 인력의 규모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전문가를 유치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효과성 분석 결과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함

□ 한편, 타당성 분석 결과는 이 제도가 정부의 조세지원으로서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함

-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실효세부담 수준이 높고
- 전문가, 연구자, 경영자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근로자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대부분(95%)은 연급여 4천만원 이하의 단순노동인력이 차지함
- 언어장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편은 아님
- 주요 외국 중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가도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제도를 급격하게 폐지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조세지원의 규모와 적용대상을 축소하면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폐지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에서는 지원규모와 적용대상을 축소하면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

2. 지원 규모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 이를 위해서 ①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이주하여 거주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②주변 경쟁국과 유사한 과세환경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는 주변 경쟁국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과 유사한 과세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때는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직후로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 소매업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던 시기였음
 - 이들 부문에서 외국 자본과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으며, 이 부문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등이 강력한 경쟁국이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후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논리가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IT, 전자, 자동차 등 고기술 산업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금융·도소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자본과 외국인 전문가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음
 -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 경제에서 외국인,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더 들어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외국인 인력 유입에 있어 홍콩, 싱가포르 등 인근의 아시아 국가가 주요 경쟁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 국제금융부문 등 특정 분야의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가 매우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유력한 경쟁국임이 분명함
 -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굳이 이들 국가를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특정 국가와 같은 수준의 과세환경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여 거주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 타이완도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이 국내 거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한편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간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공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17% 단일세율이 과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소득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소득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3%포인트를 상회하지 않음
 - 한편 총급여 3억~5억원 구간에서는 17% 단일세율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9.9%포인트이고,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13.2%포인트,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6.8%포인트로 그 격차가 커짐³¹⁾

-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①17%인 단일세율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과 ②단일세율체계를 누진세율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면서 17%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현재 1억~1억5천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옴

31)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은 <표 II-3> 참조.

- 앞의 <표 II-3>에 나타난 실효세율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세율을 20% 수준으로 올리면 대체로 연급여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소득별 구성을 보면 1억원 이상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이며, 2억원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이 0.3%임
- 17% 기본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은 장단점이 모두 있음
-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 단점이며,
 - 적용대상의 소득을 1억~1억5천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표 VI-1>에서는 17% 기본세율을 유지하면서 연급여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B)와 3억 초과분에 25%, 5억 초과분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C)의 실효세부담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음
- B안의 경우, 연급여가 5억원일 때 실효세율이 20.2%가 되고, 7억원일 때 21.6%, 10억원일 때 22.6%로 현행 제도에 비해 세부담이 각각 23.5%, 26.9%, 32.9% 증가함
 - C안의 경우, 연급여가 5억원일 때는 B안의 경우와 같으며, 7억원일 때는 실효세율이 23%, 10억원일 때는 25.1%로 현행 제도에 비해 세부담이 각각 35.3%, 47.6% 증가함
- 17%인 단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17%인 기본세율을 유지하면서 누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비교해 보면, 단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단일세율’이라는 제도의 단순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누진세율제도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제도가 복잡해지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과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의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표 VI-1> 누진세율 적용시 세부담 수준의 변화 모의실험

(단위: 백만원, %)

급여수준	세부담 수준			실효세율		세부담증가율	
	현행 (A)	3억이상 25% (B)	3억+ 25% 5억+ 30% (C)	B	C	B	C
2억원	34	34	34	17.0	17.0	0.0	0.0
3억원	51	51	51	17.0	17.0	0.0	0.0
4억원	68	76	76	19.0	19.0	11.8	11.8
5억원	85	101	101	20.2	20.2	18.8	18.8
6억원	102	126	131	21.0	21.8	23.5	28.4
7억원	119	151	161	21.6	23.0	26.9	35.3
8억원	136	176	191	22.0	23.9	29.4	40.4
9억원	153	201	221	22.3	24.6	31.4	44.4
10억원	170	226	251	22.6	25.1	32.9	47.6

출처: 자체계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를 제한하는 문제임
 - 현행 제도는 특정 직종이나 업종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소득금액에 따른 제한도 없음
- 앞서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종,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와 그런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직종, 업종을 구분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발휘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직종, 업종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주어진 재원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지원대상 직종이나 업종을 선정함에 있어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경제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직종, 업종을 계속 개정하여야 하는데,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신속한 개정이 쉽지 않음
 - 또한 제도가 복잡하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종, 업종을 구분하여 제한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제도가 단순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유치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어떤 직종이나 업종이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내국인과 함께 근로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선진기술, 선진 경영기법,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주어진 재원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지원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즉, 조세지원이 없어도 국내에서 근무할 동기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음
 -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세지원이 없어도 외국인들이 그 기업에서 근무하기를 원할 수도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이 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꼭 필요한 부문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할 유인이 적으므로 조세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 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제한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순수한 내국인 기업에 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대한 수요가 더 크며, 우리나라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자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이 제도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조세감면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환경을 내국인 기업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예외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지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함: 최기호(2014), 강성태·전병욱(2012), 전태용·변용환(2010), 이성봉(2010), 안종석·최준욱(2003),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등
 - 외국인 전문가의 국내 근무를 지원하는 이유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내국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면, 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 순수한 내국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중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기업은 2% 내외임
- 지원대상 설정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2014년 이전부터 근무한 자에게는 5년의 기한 제한 없이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데 대한 문제임
-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여 단기간 생활할 때, 그에 따른 생활비가 과다한 반면 세 부담은 높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임
 - 그러나 거주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활환경, 과세여건 등에서 내국인과의 차이가 점점 축소되어 내국인과 동등한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세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도 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으로 지원기간을 제한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의 국가 중 3개의 국가에서는 5년으로 제한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2014년 이전부터 근무한 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간 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근무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지원기간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5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4년 적용대상자 중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4%, 5~10년 근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였음

□ 지원대상 설정과 관련된 세 번째 쟁점은 ‘외국인’에 대한 것임

- 현행 제도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국적보다는 ‘거주자’의 개념이 중요하게 고려됨
 -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거주했는지를 고려하여 판정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내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국적보다는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국적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았던 자가 해당 국가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데 대해 조세감면의 특혜를 제공함
- 우리나라도 국적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적이 없는 자’가 국내로 이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과세특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되지 않으므로, ‘거주한 적이 없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강의를 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도 적용에 문제가 없음

□ 지원대상 설정과 관련된 네 번째 쟁점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국내 사업체에 대한 규정임

-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덴마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함
 - 스웨덴은 국내 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네덜란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아일랜드는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제한함
- 외국인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는 것보다는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국내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사

업장, 국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주가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세부담을 축소하였을 때, 그 축소된 세액이 고용주의 이익에 반영되어 고용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근로자에 대한 세금감면액 중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도 있음

□ 지원대상 설정과 관련된 마지막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적용대상이 중복되는데 따른 문제임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따르면, 특정 계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일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2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이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과세특례제도보다는 적용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감면 기간이 짧은 반면, 감면 규모는 더 큼
- 두 개의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제18조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제18조의2에 규정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나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단, 제1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5년)에서 제18조가 적용된 기간은 제외함

참 고 문 헌

- 강성태·전병욱,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비조세변수의 영향」,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12, pp.163~18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 연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5.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의견」, 2014.
- 신상화, 『국제이주의 학력수준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working pape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안종석·정재호·최기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평가 및 정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안종석·최준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 이성봉,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논총』, 제28권 1호, 2010, pp.97~119.
- 전태영·변용환,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0, pp.115~136.
- 최기호,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도 의무심층평가 대상 후보군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2015.
- Antecol, H., Cobb-Clark, D. A., and Trejo, S. J. “Immigration policy and the skills of

- immigrants to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1), 2003, pp.192~218.
- Beine, M. A. R., Docquier, F., and Schiff, M., “Brain drain and its determinants: A major issue for small states,” Discussion Paper No.3398, The Institute for Study of Labor(IZA), 2008.
- Docquier, F., Lohest, O., and Marfouk, A., “Brain drai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1(2), 2007, pp.193~218.
- Gibson, J. and McKenzie, D., “The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e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of the best and brightest: Evidence from the Pacific,”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5(1), 2011, pp.18~29.
- Mayda, A. M., “International migration: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bilateral flow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3(4), 2010, pp.1249~1274.
- McKenzie, D. and Rapoport, H., “Self-selection patterns in Mexico-US migration: the role of migration network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4), 2010, pp.811~821.
- Van Dalen, H. P., Groenewold, G., and Schoorl, J. J., “Out of Africa: what drives the pressure to emigrat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4), 2005, pp.741~778.

부 록



<부 록>

<표 A-1> 2008~2014년도 산업별(중분류)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단위: 명, %, 억원)

산업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건설업	12	1.1	24	1.6	78	1.5	60	1.0	83	1.2	91	1.2	92	1.1	440	1.2
광업	0	0.0	1	0.1	2	0.0	2	0.0	5	0.1	0	0.0	3	0.0	13	0.0
교육서비스업	4	0.4	9	0.6	37	0.7	62	1.0	70	1.1	57	0.8	57	0.7	296	0.8
금속제품 제조업	24	2.2	13	0.9	35	0.7	15	0.3	18	0.3	19	0.3	11	0.1	135	0.4
금융 및 보험업	316	29.3	377	25.0	618	12.3	653	10.9	661	10.0	634	8.5	611	7.5	3,870	10.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	1.9	40	2.6	118	2.3	139	2.3	145	2.2	140	1.9	133	1.6	735	2.1
기타 제조업	9	0.8	11	0.7	18	0.4	16	0.3	13	0.2	10	0.1	9	0.1	86	0.2
농림어업	3	0.3	1	0.1	3	0.1	1	0.0	2	0.0	1	0.0	0	0.0	11	0.0
도매 및 소매업	154	14.3	270	17.9	906	18.0	995	16.6	1,071	16.1	1,068	14.4	1,060	13.0	5,524	15.4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15	1.4	7	0.5	18	0.4	15	0.3	9	0.1	11	0.1	11	0.1	86	0.2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20	1.9	19	1.3	29	0.6	49	0.8	63	0.9	69	0.9	79	1.0	328	0.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	0.7	13	0.9	43	0.9	44	0.7	39	0.6	34	0.5	45	0.6	226	0.6
부동산 및 임대업	23	2.1	33	2.2	78	1.5	98	1.6	96	1.4	107	1.4	86	1.1	521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	0.2	5	0.3	30	0.6	81	1.4	64	1.0	63	0.8	44	0.5	289	0.8
사업지원 서비스업	21	1.9	16	1.1	194	3.8	254	4.2	122	1.8	359	4.8	491	6.0	1,457	4.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2	0.2	5	0.3	4	0.1	5	0.1	5	0.1	3	0.0	5	0.1	29	0.1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2	1.1	8	0.5	30	0.6	20	0.3	26	0.4	17	0.2	30	0.4	143	0.4

<표 A-1> 2008~2014년도 산업별(중분류)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 계속

(단위: 명, %, 억원)

산업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간	
	인원수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1	0.1	2	0.1	3	0.1	2	0.0	4	0.1	2	0.0	2	0.0	16	0.0
운송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1	0.0	2	0.0
운송장비 제조업	68	6.3	21	1.4	186	3.7	209	3.5	237	3.6	232	3.1	234	2.9	1,187	3.3
운수업	12	1.1	24	1.6	155	3.1	186	3.1	237	3.6	240	3.2	215	2.6	1,069	3.0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7	0.6	24	1.6	33	0.7	38	0.6	37	0.6	37	0.5	33	0.4	209	0.6
음식점 및 숙박업	15	1.4	18	1.2	70	1.4	44	0.7	45	0.7	49	0.7	55	0.7	296	0.8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8	3.5	72	4.8	366	7.3	505	8.4	574	8.6	658	8.9	743	9.1	2,956	8.2
1차 금속제품 제조업	8	0.7	5	0.3	26	0.5	22	0.4	27	0.4	30	0.4	27	0.3	145	0.4
전력, 가스 및 증기업	1	0.1	2	0.1	4	0.1	3	0.1	3	0.0	4	0.1	5	0.1	22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6	19.1	295	19.5	1,065	21.1	1,390	23.2	1,533	23.1	1,743	23.5	2,135	26.2	8,367	23.3
정밀기기 제조업	4	0.4	7	0.5	34	0.7	32	0.5	34	0.5	33	0.4	50	0.6	194	0.5
정보통신 및 방송업	2	0.2	3	0.2	13	0.3	14	0.2	19	0.3	24	0.3	24	0.3	99	0.3
화학제품 제조업	39	3.6	53	3.5	176	3.5	173	2.9	205	3.1	293	3.9	301	3.7	1,240	3.5
미분류	33	3.1	133	8.8	672	13.3	865	14.4	1,195	18.0	1,402	18.9	1,555	19.1	5,855	16.3
합계	1,079	100	1,511	100	5,044	100	5,992	100	6,642	100	7,431	100	8,147	100	35,846	100

출처: 국제정 내부자료

〈표 A-2〉 2008~2014년도 주요 산업별(대분류)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단위: 명, %, 억원)

산업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간		
	인원수	비중	인원수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건설업	12	1.1	24	1.6	78	1.5	60	1.5	83	1.0	91	1.2	92	1.1	440	1.2	2.5
광업	0	0.0	1	0.1	2	0.1	2	0.0	5	0.0	0	0.1	3	0.0	13	0.0	6.0
농림어업	3	0.3	1	0.1	3	0.0	1	0.1	2	0.0	1	0.0	0	0.0	11	0.0	
서비스업	781	72.4	1,077	5.3	3,208	69.4	3,789	63.6	3,956	63.2	4,385	59.6	4,859	59.6	22,055	61.5	3.2
전력·수도·가스·열차 및 해기물 처리업	2	0.2	4	0.3	7	0.1	5	0.1	7	0.1	6	0.1	7	0.1	38	0.1	1.7
제조업	248	23.0	271	3.7	1,074	18.9	1,270	21.3	1,394	21.2	1,546	21.0	1,631	20.0	7,434	20.7	2.6
미분류	33	3.1	133	8.8	672	10.1	865	13.3	1,195	14.4	1,402	18.0	1,555	19.1	5,855	16.3	2.3
합계	1,079	100	1,511	100	5,044	100	5,992	100	6,642	100	7,431	100	8,147	100	35,846	100	2.9

출처: 국제청 내부자료

〈표 A-3〉 2008~2014년도 서비스 업체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단위: 명, %, 억원)

산업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금융 및 보험업	316	43.0	377	36.6	618	19.6	653	17.2	661	16.7	634	14.2	611	12.1	3,870	17.5
도매 및 소매업	154	21.0	270	26.2	906	28.8	995	26.2	1,071	27.0	1,068	23.9	1,060	21.0	5,524	24.9
사업지원 서비스업	21	2.9	16	1.6	194	6.2	254	6.7	122	3.1	359	8.0	491	9.7	1,457	6.6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8	5.2	72	7.0	366	11.6	505	13.3	574	14.5	658	14.7	743	14.7	2,956	1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6	28.0	295	28.6	1,065	33.8	1,390	36.6	1,533	38.7	1,743	39.1	2,135	42.4	8,367	37.7
합계	735	100	1,030	100	3,149	100	3,797	100	3,961	100	4,462	100	5,040	100	22,174	100

출처: 국제청 내부자료

〈표 A-4〉 2008~2014년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체별 이용자 수 및 평균소득

(단위: 명, %, 억원)

산업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간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인원수	비중	평균소득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	10.7	5.0	47	15.9	4.3	388	36.4	2.3	636	45.8	2.4	690	45.0	2.4	817	46.9	2.6	1,042	48.8	2.6	3,642	43.53	2.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5.8	4.1	14	4.7	4.8	29	2.7	3.0	49	3.5	2.9	55	3.6	3.3	131	7.5	3.4	206	9.6	3.2	496	5.93	3.3
연구개발업	12	5.8	4.4	9	3.1	4.9	40	3.8	1.8	33	2.4	1.8	84	5.5	2.8	69	4.0	2.5	41	1.9	2.7	288	3.44	2.6
전문서비스업	142	68.9	7.9	202	68.5	5.7	498	46.8	3.9	527	37.9	3.7	549	35.8	3.8	573	32.9	4.0	688	32.2	3.7	3,179	37.99	4.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8	8.7	4.7	23	7.8	4.3	110	10.3	2.7	145	10.4	2.8	155	10.1	3.6	153	8.8	3.8	158	7.4	2.8	762	9.11	3.3
합계	206	100	6.9	295	100	5.3	1,065	100	3.1	1,390	100	2.9	1,533	100	3.1	1,743	100	3.2	2,135	100	3.0	8,367	100	3.2

출처: 국제청 내부자료

